

연구보고 2017-06



KIC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국공립 유치원 행정 지원체계 연구

김근진 박창현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7-06

국공립 유치원 행정 지원체계 연구

김근진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2017년 7월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p.82)에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2017년의 25%에서 2022년에는 4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현장의 교원들이 겪고 있는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 중에서 병설유치원은 독립된 행정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행정실로부터 행정 업무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아 초등학교 행정실로부터 행정지원을 원활히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행정지원을 원활하게 받지 못할 경우 그 행정업무 부담은 온전히 교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면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단설유치원은 독립된 행정실을 갖추고 있으나 보건인력을 비롯한 행정지원 인력의 부족으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행정지원 체계, 그 중에서도 특히 행정인력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국공립 유치원 원장, 교사, 행정직원 등 현장 관계자와의 면담 및 시·도 교육청 장학관 및 장학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국공립 유치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가 국공립 유치원의 행정인력 지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7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직무대행 **이미화**

차 례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내용	15
3. 연구방법	16
II. 연구배경	18
1. 국공립 유치원 행정지원 관련 법규정	18
2. 선행연구	22
III. 국공립 유치원 행정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24
1. 병설유치원 행정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24
2. 단설유치원 행정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51
3. 단병설 유치원 공통 행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	58
4.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향	80
IV. 결론 및 정책제언	82
1. 병설유치원 행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	82
2. 단설유치원 행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	84
3. 단병설 공통 행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	86
4.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향	88
참고문헌	89
부록	91
시·도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93

표 차례

〈표 I-3-1〉 면담 대상자(국공립 유치원 관계자)	16
〈표 I-3-2〉 참여 전문가(13개 시·도 교육청 장학관 및 장학사)	17
〈표 II-1-1〉 유아교육법상 교직원의 구분	18
〈표 II-1-2〉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사 배치규정	18
〈표 II-1-3〉 유아교육법 시행령상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기준	19
〈표 II-1-4〉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상 겸임 규정	20
〈표 II-1-5〉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겸임 규정	20
〈표 II-1-6〉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상 겸임 규정	21
〈표 II-1-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21

부록 표 차례

〈부표 1〉 서울특별시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93
〈부표 2〉 부산광역시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95
〈부표 3〉 대구광역시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96
〈부표 4〉 인천광역시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97
〈부표 5〉 광주광역시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99
〈부표 6〉 대전광역시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101
〈부표 7〉 울산광역시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102
〈부표 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104
〈부표 9〉 경기도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106
〈부표 10〉 강원도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111
〈부표 11〉 충청북도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112
〈부표 12〉 충청남도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113
〈부표 13〉 전라북도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115
〈부표 14〉 전라남도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117
〈부표 15〉 경상북도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119
〈부표 16〉 경상남도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120
〈부표 1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122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7년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p.82)에는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2017년 25%에서 2022년에는 4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교육현장에서는 병설유치원 행정직원의 겸임수당 지급 및 독립원감 배치 등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행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 2017년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유치원 중 단설유치원은 351개, 병설유치원은 4393개로 국공립유치원의 93%는 병설유치원으로 구성됨(한국교육개발원 2017년 교육통계연보, 2.유치원 현황, 2-2. 설립별 유치원 수).
 - 국공립 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이 원장 및 원감을 겸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들은 유아교육 전공자가 아니고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떨어짐.
 - 병설유치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경우는 교장 및 교감이 겸임수당을 받음에 비해 현재까지 법적 근거의 미비로 겸임 수당을 받지 못한 관계로 병설유치원 행정업무 지원에 소극적임.
-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에 비해 규모가 크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독립원장 및 원감이 있으며, 별도의 행정실을 통한 행정지원이 잘 되어 있으나, 행정직원의 수가 부족할 수 있고, 설립을 위한 예산 및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 국공립 단병설 유치원의 행정지원 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국공립 단병설 유치원의 행정지원체계를 비교하고 그 특징 및 각각의 행정지원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 유치원의 기관 내 필요한 인력에 대한 조사에서 병설유치원은 행정 실무사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단설유치원은 보조교사가 가장 높게 나타남. (최은영·황성은·황우상, 2012, p.73)
- 단병설 유치원 간 행정지원 수요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행정지원은 단병설 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내용

□ 단병설 유치원 행정운영 현황 진단

- 국공립 유치원 행정지원 관련 법규정, 관련 연구 등의 문헌 분석, 단병설 유치원 방문 면담 등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의 유형별 행정운영 현황을 조사함.

□ 단병설 유치원 행정지원 개선방안 제시

- 교육청 장학관 및 장학사 등의 전문가 자문회의, 단병설 유치원 방문 면담 등을 통하여 단병설 유치원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맞춤형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함.

□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향 제시

- 단병설 유치원 행정운영 현황 진단 및 행정지원 인력체계 개선방안 분석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향 제시

다. 연구방법

□ 문헌조사

- 국공립 유치원 행정지원체계에 대한 법령을 분석함으로써 국공립 유치원 행정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파악함.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탐색함.

면담조사(국공립 유치원 방문 면담)

- 단병설 유치원을 방문하여 국공립 유치원 각각의 유형에 따른 행정지원 인력체계의 특성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탐색함.
- 유치원 별 원장, 원감, 교사,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개별면담 및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함.

전문가 자문

- 시도교육청 장학관 및 장학사를 대상으로 면담 또는 서면을 통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
- 전문가 자문의 주제는 행정지원체계에 있어서 국공립 단병설 유치원 각각의 행정지원 수요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진행함.

2. 연구배경

가. 국공립 유치원 행정지원 관련 법규정

- 국공립 유치원 행정지원 관련 법규정은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시·도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도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등에 규정되어 있다.

나. 선행연구

- 국공립 유치원 행정지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유치원 교사들이 느끼는 행정업무 부담에 대해 분석하고 있음.
-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유치원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은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지원인력이 필요하며, 단병설 유치원 별로 요구하는 행정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병설 유치원 별로 맞춤형 행정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줌.

3. 국공립 유치원 행정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가. 병설유치원 행정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 전담원감 배치

- 전담원감은 유치원 관리에 있어서 겸임원감보다 우위에 있음.
- 전담원감은 유아교육 전공자이기 때문에 겸임원감보다 교사들과 의사소통이 용이.
- 전담원감은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 중에서 일부 유치원에 배치됨.
- 전담원감은 겸임원장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도 있으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
- 전담원감의 입장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과 초등학교 교장을 입장이기도 함.
- 전담원감이 없는 소규모 학급 병설유치원은 교사가 실질적인 원감 역할도 담당해야 함.
- 유치원 교사들은 전담원감에게 행정업무의 전문성을 기대함.
- 3학급 이상이지만 전담원감이 없는 병설유치원에서는 부장교사가 사실상의 원감 역할을 수행함.

□ 교무행정지원사 배치

- 교무행정지원사는 비정규직으로 교육공무직으로 분류됨.
- 전담원감이 올 없는 1-2학급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에는 교무행정지원사 배치가 특히 필요함.
- 교무행정지원사의 업무 특성은 전담원감과 구분되며 행정실무를 담당.
- 교무행정지원사는 유아학비, 정보공시 등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
- 교무행정지원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교육공무원인 행정실 일반직 직원과 구별됨.

- 교무행정지원사에 대한 유치원 만족도는 매우 높음.
- 교무행정지원사 배치기준은 시·도 교육청에 따라 차이가 있음. 전담원감이 없는 병설유치원에 한하여 배치되는 경우, 단설유치원에만 배치되는 경우, 단설유치원과 일정 학급 수 이상의 병설유치원에 배치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교무행정지원사의 업무 분장은 그 업무 한계가 불명확한 점이 있음.
- 교무행정지원사와 초등학교 행정실 관계는 협조가 잘 되지 않은 경우도 많음.
- 유치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교무행정지원사가 전담원감보다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도 있음.

초등학교 행정실과 병설유치원의 관계

- 초등학교 행정실에서는 병설유치원 행정지원 업무를 안 해도 되는 추가적인 부담이라는 인식이 있음.
-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병설유치원 교사에게 행정업무 부담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음.
- 초등학교 행사에 병설유치원 교직원들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초등학교 행사를 할 때에는 병설유치원 교직원들이 지원하지만 유치원 행사에는 초등학교 교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
- 행정지원 인력 배치에 있어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비해 후순위로 밀림.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 분리

- 병설유치원 전담 행정직원을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분리한다면 유치원 교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지원을 요청하기가 수월.
- 유아학비 업무 등에서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임.
-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이 분리되면 행정실 업무분장 상 해당 직원에게 업무 과중이 발생할 우려 있음.

행정실 직원 겸임수당

-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겸임수당을 지급할 필요성 있음.
- 행정실 직원 겸임수당 적용 범위는 행정실장에 한정하지 말고 실제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지급될 필요 있음.
- 행정실 직원 겸임수당 근거규정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행정실 직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액수가 크지 않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음.

□ 초등학교 행정실과 독립된 행정시스템

- 병설유치원도 단설유치원과 같이 독립된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행정실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유치원 원장, 원감의 결재를 받는 행정시스템을 의미.
- 병설유치원 교무실에서 행정실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 병설유치원은 규모가 작고 초등학교 행정실의 지원을 받으면서 행정실장의 결재를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행정시스템 독립은 어려움.

□ 공문 공람

- 초등학교에 오는 공문이 병설유치원에 공람이 되지 않아 병설유치원 유치원 업무처리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음.
- 공문에도 병설유치원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음.
- 공문을 유치원과 공람하지 않는다면 초등학교와 유치원 모두를 수신처를 잡을 필요 있음.
- 교무행정지원사에게도 행정실 공문이 공람 안 되는 문제 있음.

□ 업무분장 개선

- 교무행정지원사에게 유치원 교직원들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업무분장 이외에 업무를 요구하기도 함.

- 교무행정지원사의 경우 업무분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매우 많이 발생.
- 업무분장 갈등을 해결하는 시스템도 병설유치원에서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업무분장 상 업무 한계 규정이 불명확함.
- 업무분장을 둘러싼 갈등은 유치원 교사와 교무행정지원사 뿐 아니라 비정규직 인력 간에도 발생하고 있음.
- 유아교육의 특성 상 초등교육에 비해 업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음.

나. 단설유치원 행정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 보건인력 지원

- 단설유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인력은 보건인력임.
- 단설유치원에 배치되어야 하는 보건인력으로 보건교사는 유아교육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간호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법상 규정을 통해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음.
-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초등학교 수준 행정지원 인력 배치

- 단설유치원 행정직원 배치기준은 시·도마다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학급 수의 초등학교보다 적은 인력이 배치됨.
- 7학급의 단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6학급 기준의 인력이 지원될 필요가 있음.
- 시·도 교육청 인력배치는 총정원제가 적용되는데 유치원이 초등학교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발생함.

□ 현장학습 지원인력

-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보다 학급 수가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 문제로 인해 현장학습을 가기가 어려움.

- 단설유치원의 현장학습 지원 인력 채용에 있어 자원봉사자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 단병설 유치원 공통 행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 교사 추가 배치

- 유치원에 행정지원 인력보다 정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 행정지원 뿐만 아니라 수업지원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음.
- 그러나 학급당 2명의 정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공립유치원에서는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순회교사제도를 도입하여 유치원 교사의 수업 보결 시 수업지원을 하고 있음.
- 행정직원의 순회는 주인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음.
- 대체교사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정교사가 수업지원을 해야 하므로 행정업무 부담도 커지게 됨.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유치원 운영비에서 조달하게 됨.

□ 급식실 지원

- 병설유치원은 자체적인 급식실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초등학교 급식실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유아에게 적합한 식단을 구성할 수 없음.
- 초등학교 급식실은 간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간식은 병설유치원 교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식단을 구성하여 조달해야 함.
- 병설유치원은 방학 중에도 방과후 과정 등으로 인해 급식을 할 필요가 있으나 초등학교 급식실은 방학 중에 운영하지 않으므로 병설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조리원을 채용해야 함.

- 단설유치원도 자체적인 급식실을 갖추지 못하거나 영양사와 조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지원을 받아야 함.

□ 안전관리 인력 지원

- 유치원 원아들은 초등학생보다 어리기 때문에 교문뿐만 아니라 현관까지도 안전관리 인력이 필요.
- 유치원 귀가지도 등을 위해 안전관리 인력이 지원되지 않으면 교사들이 안전관리를 담당.
- 학교보안관과 배움터 지킴이는 초등학교에는 지원되지만 유치원에는 지원되지 않음.
- 유치원 부지는 초등학교에 비해 좋은 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보다 학급 수가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부담이 더 커짐.

□ 기간제 인력 무기계약직 전환

- 유치원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기간제보다 정규직을 원하는 시각도 있음.
-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이 비정규직으로 일정기간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치원과 업무시스템 상 갈등 발생 가능.
- 교육공무직의 소속이 교육청이므로 교육공무직의 업무에 관해 교육청과 유치원의 소통 필요.

□ 교육 관련법 유치원 포함

-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도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고 지원을 받기가 어려움.
- 학교보건법에는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에 보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기 어려움.

- 학교용지특별법에도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부지를 비싸게 구입해야 함.
- 초중등학교가 들어가 있는 교육 관련법에는 모두 유치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유치원 명칭을 학교가 부각되는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시설 이용

- 병설유치원의 초등학교 시설 이용은 초등학생에게 시설 사용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비는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음.
- 유치원에서는 바깥놀이 1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 미세먼지 등으로 야외활동이 어려울 때 단설유치원은 특별실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병설유치원은 그러한 공간을 사용하기 어려움.
-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도서관, 보건실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려움.
- 단설유치원은 학급 수가 많아 놀이터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 시설 주무관

- 시설주무관은 시설 및 환경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시설주무관은 교육공무원이지만 TO를 넘는 인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음.
- 시설관리 업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설주무관은 유치원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 인력임.

□ 비정규직 인력 배치

- 유치원이 요구하는 행정지원 인력은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음.
-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는 방학 중 급여문제가 발생함.
- 비정규직 인력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발생함.

라.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향

-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향은 장기적으로는 단설유치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
- 단설유치원은 독립된 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보다 행정지원에 용이함.

4. 결론 및 정책제언

가. 병설유치원 행정지원 체계 개선방안

-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에는 모두 전담원감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교무행정지원사 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을 분리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업무분장의 문제가 있어 어려움.
-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에게 병설유치원 겸임수당을 지급해야 함.
- 초등학교에 오는 공문이 유치원에도 공람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업무분장을 개선하여 교무행정지원사와 같은 행정지원인력의 업무가 과중하게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단설유치원 행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

- 단설유치원에는 보건인력이 배치되어야 함.
- 단설유치원에는 비슷한 학급 수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수준으로 행정지원 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단설유치원은 학급 수가 많으므로 현장학습의 안전관리를 담당할 인력이 지원될 필요가 있음.

다. 단병설 유치원 공통 행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

- 국공립 유치원에 행정업무 및 수업지원을 담당할 정교사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제도상 한계로 실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여 교사의 수업부담으로 인한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병설유치원 뿐만 아니라 단설유치원의 경우에도 자체 급식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급식실 및 영양사, 조리원 지원을 확대해야 함.
- 학교보안관 및 배움터 지킴이 등의 안전관리 인력 지원을 유치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간제 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하여 유치원과 교육청의 소통이 확대되어야 함.
- 초중등학교가 들어가는 교육 관련법에는 모두 유치원이 포함되어야 함.

라.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향

-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향은 장기적으로는 단설유치원 확대에 가는 것이 바람직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2017년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p.82)에는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2017년 25%에서 2022년에는 4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6월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유은혜 의원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의 한 단설유치원을 방문하여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 등과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파이낸셜 뉴스, 2017.06.13.).

해당 간담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단설유치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예산 및 부지 등의 제약으로 인해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병설유치원 중심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병설유치원 확대를 위해서는 겸임수당 지급 및 독립원감 배치 등의 행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병설유치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유치원 교사도 병설유치원은 행정실,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의 행정지원을 초등학교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으면 행정지원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병설유치원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단설유치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단설유치원은 별도의 행정실이 있어 행정지원에 용이하지만 행정직원의 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단병설 유치원을 포괄하는 국공립유치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행정지원체계 그중에서도 행정인력 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나. 연구의 목적

2017년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유치원 중 단설유치원은 351개, 병설유치원은 4393개로 국공립유치원의 93%는 병설유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7년 교육통계연보, 2. 유치원 현황, 2-2 설립별 유치원 수).

국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설유치원은 보통 1 ~ 2개 학급인 소규모로 운영되며,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이 원장 및 원감을 겸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들은 유아교육 전공자가 아니고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병설유치원 업무는 본래의 업무인 초등학교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인식되는 구조이다.

병설유치원의 행정업무를 지원해야 하는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경우는 교장 및 교감이 겸임수당을 받음에 비해 최근까지 법적 근거의 미비로 겸임수당을 받지 못한 관계로 병설유치원 행정업무 지원에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근거하여 병설유치원 원장 및 원감을 겸임하는 업무에 대해 겸임수당을 받고 있으나, 행정지원 담당 교직원들은 병설유치원 업무를 지원함에도 관련규정의 미비로 겸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 행정직·기술직 공무원이 병설유치원의 행정직·기술직 업무 겸임이 가능하다는 근거규정을 만들으로써 행정직원들의 겸임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 수당규정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국공립유치원의 행정업무 현황을 보면 원아모집, 교육자료 및 기자재 관리, 시설 설비 점검 및 관리, 행정 사무 및 공문서 작성·관리, 예산 관련 업무 등이 있다(이유진·김현주, 2010, p.23).

단설유치원은 별도의 행정실이 있어 행정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반면, 병설유치원은 별도의 행정실이 유치원 내에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초등학교 행정실의 지원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에 비해 행정지원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관리자의 이해부족 및 행정실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병설유치

원 교사들은 행정업무를 자신들이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이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김경철·장연주, 2010).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에 비해 규모가 크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독립원장 및 원감이 있으며, 별도의 행정실을 통한 행정지원이 잘 되어 있으나, 행정직원의 수가 부족할 수 있고, 설립을 위한 예산 및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규모 단설유치원의 경우 원아의 수가 수백 명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유치원이 유아교육상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병설유치원은 겸임원장 및 원감의 이해부족과 초등학교 행정실과의 업무협조 미비 등의 이유로 단설유치원에 비해 행정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독립원감이 배치되고 초등학교와의 업무협조가 잘 될 경우 초등학교의 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유치원으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공립 단병설 유치원의 행정지원 체계를 비교하고 상호 장단점, 특징 및 행정지원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 유치원의 기관 내 필요한 인력에 대한 조사에서 병설유치원은 행정실 무사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단설유치원은 보조교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최은영·황성온·황우상, 2012, p.73).

이와 같이 단병설 유치원 간 행정지원 수요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행정지원은 단병설 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내용

가. 국공립 유치원 유형별 행정운영 현황 진단

국공립 유치원 행정지원 관련 법규정, 관련 연구 등의 문헌분석, 단병설 유치원 방문 면담 등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의 유형별 행정운영 현황을 조사한다.

나. 단병설 유치원 행정지원 개선방안 제시

교육청 장학관 및 장학사 등의 전문가 자문회의, 단병설 유치원 방문 면담

등을 통하여 단병설 유치원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맞춤형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향 제시

단병설 유치원 행정운영 현황 진단 및 행정지원 인력체계 개선방안 분석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향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조사

국공립 유치원 행정지원체계에 대한 법령을 분석함으로써 국공립 유치원 행정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파악한다.

그 외에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탐색한다.

나. 면담조사(국공립 유치원 방문 면담)

단병설 유치원을 방문하여 국공립 유치원 각각의 유형에 따른 행정지원 인력체계의 특성,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서 유치원별 원장, 원감, 교사, 행정직원을 상대로 개별면담 및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한다.

〈표 1-3-1〉 면담 대상자(국공립 유치원 관계자)

대상	유치원 유형 및 담당 업무
병설유치원 원감 A	병설유치원 전담원감
단설유치원 원장 A	단설유치원 원장
단설유치원 원장 B	단설유치원 원장
병설유치원 부장교사 A	병설유치원 부장교사
병설유치원 교사 A	병설유치원 교사
병설유치원 교사 B	병설유치원 교사
병설유치원 교사 C	병설유치원 교사

(표 I-3-1 계속)

병설유치원 교사 D	병설유치원 교사
단설유치원 교사 A	단설유치원 교사
병설유치원 행정실장 A	병설유치원 행정실장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다. 전문가 자문

17개 시·도 교육청 장학관 및 장학사를 대상으로 면담 또는 서면을 통한 전문가 자문을 수행한다. 전문가 자문 주제는 국공립 단병설 유치원 행정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13개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정책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가 전문가 자문에 참여하였다.

〈표 I-3-2〉 참여 전문가(13개 시·도 교육청 장학관 및 장학사)

대상	전문 영역 및 담당 업무
교육청 장학관 A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교육청 장학관 B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교육청 장학관 C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교육청 장학관 D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교육청 장학관 E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교육청 장학관 F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교육청 장학관 G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교육청 장학관 H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교육청 장학관 I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교육청 장학관 J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교육청 장학사 K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
교육청 장학관 L	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II. 연구배경

1. 국공립 유치원 행정지원 관련 법규정

국공립 유치원의 교직원 배치에 관해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표 II-1-1〉 유아교육법상 교직원의 구분

법령	관련 조항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는 보건교사 배치의 근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간호사 배치는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에는 보건교사 배치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학교보건법 상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하며 학교보건법 제15조에 의하면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II-1-2〉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사 배치 규정

법령	관련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표 II-1-2 계속)

제9조의2(보건교육 등)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기준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표 II-1-3〉 유아교육법 시행령상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기준

법령	관련 조항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게 한다. 다만, 2학급 이하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 및 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 이란 2학급 이하의 유치원을 말한다.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1-2학급 병설유치원에는 전담원감이 배치되지 않으며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에 전담원감이 배치되고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되는 직원의 기준에 대해서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부록에 제시하였다.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에는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이 병설유치원원의 원장 및 원감을 겸임하는 근거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II-1-4>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상 겸임 규정

법령	관련 조항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①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2(겸임)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1. 관련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각급 학교 교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인근학교의 교원간 또는 병설(부설)된 학교와 당해 학교를 병설(부설)한 학교의 교원간

초등학교 행정직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임하는 근거규정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제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간의 겸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었는데 최근에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 간의 겸임을 규정하는 내용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포함되었다.

<표 II-1-5>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겸임 규정

법령	관련 조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대학 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겸임)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표 II-1-5 계속)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	--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서는 “초등학교 행정직·기술직 공무원이 병설유치원의 행정적·기술적 업무 겸임 가능”하다고 규정하여 초등학교 행정직원들의 병설유치원 겸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수당규정에는 아직 이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여 행정직원들이 겸임수당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II-1-6> 지방공무원법 인사 분야 통합지침상 겸임 규정

법령	관련 조항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II. 보직관리 4. 겸임(법 제30조의3, 임용령 제7조의5) ○ 겸임은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능 ※예: 초등학교 행정직·기술직 공무원이 병설유치원의 행정적·기술적 업무 겸임 가능.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규정은 각 시·도별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교육공무직원 채용은 교육감이 당사자가 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II-1-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법령	관련 조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나.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표 II-1-7 계속)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제8조(채용) ①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은 교육감이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에 관하여 위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수습기간) ①신규채용된 자의 수습기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2. 선행연구

국공립 유치원 행정지원에 관하여는 주로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입장에서 행정업무 부담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에 나타나 있다.

이유진·김현주(2010)은 단일학급 병설유치원 교사의 직무수행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단일학급 교사가 담당하는 유치원 행정 업무로는 원아모집, 교육자료 및 기자재 관리, 시설 설비 점검 및 관리, 행정 사무 및 공문서 작성·관리, 예산 관련 업무 등이 있으며, 행정실과 업무의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교사들의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p.23-24).

김안나(2012)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겸임원장의 시각에서 병설유치원의 쟁점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서 겸임원장들이 유치원보다 초등학교 운영에 관심이 치우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병설유치원 교사에게 행·재정 업무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공립유치원 저경력 교사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 대해 연구한 신주은·이대균(2014)은 병설 또는 단설유치원에 근무하는 저경력 교사들이 행정지원과 관련하여 고연령 비정규직 관리의 어려움, 각종 업무처리의 어려움, 초등학교와의 업무협조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개원 공립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의 교직생활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 대해 연구한 최윤미·이대균(2015)은 개원 공립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행정적으로 상급기관과 관리자의 개원 행정 업무 지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교육지원청의 지도·점검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특히 저경력 교사들일수록 비정규직 관리 및 초등학교와의 업무협조에서 오는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립유치원은 방학 중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방학 중 종일제 운영에 대한 행정업무 부담도 다루어져야 한다. 병설 유치원 교사의 방학 중 종일제 운영에 대해 연구한 김정철·장연주(2010)는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리자, 기대한 만큼 도움을 주지 못하는 보조인력, 급간식 담당 인력의 부족, 통학버스 지원 부재, 교실 공유의 어려움 등을 겪는 교사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제주 지역의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해 연구한 문지희(2016)는 급·간식 업무, 안전관리 업무, 행정실무인력 지원들의 이슈에 대해 교사들이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병설유치원 교사들은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별도의 행정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김은영·조혜주(2013)는 유치원 인력 배치 및 운영에 대한 교원의 인식 및 요구에 대한 연구에서 국공립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력은 종일제 정규교사 배치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 교원들은 행정지원 뿐만 아니라 수업지원도 같이 할 수 있는 정교사의 배치를 가장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은영·도남희·조은경·조혜주(2011)는 유치원에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지원 인력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최은영·황성은·황우상(2012)은 국공립 유치원의 기관 내 필요한 인력에 대한 조사에서 병설유치원은 행정실무사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단설유치원은 보조교사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병설 유치원 간에 지원인력에 대한 수요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 지역 공립 병설유치원 교사의 수업 외 행정업무 지원 우선순위를 분석한 박은정·이인희·김승희(2017)의 연구는 교사들이 부담하는 행정업무 중에서도 방과후과정,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 시설관리 순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느끼는 행정업무 부담에도 경중이 있으며 부담이 큰 업무부터 감경할 수 있는 지원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행정업무 부담으로 인해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별도의 행정지원 인력이 필요하며, 단병설 유치원 별로 요구하는 행정지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병설 유치원 별로 맞춤형 행정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Ⅲ. 국공립 유치원 행정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1. 병설유치원 행정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가. 전담원감 배치

병설유치원에서는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학급 이상의 규모인 경우 그 중 일부의 유치원에 전담원감이 배치되고 있다. 전담원감이 없을 경우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이 병설유치원의 원장 및 원감을 겸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겸임원장 및 원감은 유아교육 전공자가 아니고 유아교육에 근무한 경력도 없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관리자가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유아교육의 특성에 맞는 행정지원을 하기도 어려움이 따르며 교사에게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전담원감이 없는 유치원의 경우 부장교사가 사실상의 원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장교사는 학급담임도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업무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에서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의 경우 전담원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1-2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에까지 전담원감을 배치하는 것은 인력의 한계상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에는 모두 전담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전담원감의 전문성

병설유치원의 전담원감은 겸임원감보다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교사들과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병설유치원은 독립원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면 교사 혼자 부담이 너무 크다. 업무가 많고 행정실에서 푸대접한다. 유치원은 항상 뒷전이다. 교사경력 30년 만에 올해 처음 원감이 되었다. 교사들이 의지할 곳이 필요한데 독립원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병설유치원 원감 A)

독립원감이 있을 때 직원들이 호의적이고 잘해준다. 독립원감이 없으면 교사가

매우 힘들다. (병설유치원 원감 A)

겸임원장과 겸임원감은 유아교육에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에게 결정을 미룰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전담원감이 전문적인 지식에 바탕하여 유치원 운영을 훨씬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든 교사들이 병설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면 교장, 교감이 유아교육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OK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리자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업무를 훨씬 알차게 할 수 있다. (병설유치원 원감 A)

2) 전담원감의 배치기준

전담원감은 모든 유치원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시·도 교육청에 따라 기준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에 배치된다. 그러나 3학급 이상이라고 모든 유치원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일부의 유치원에만 배치된다. 시·도 교육청마다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유치원에 전담원감이 배치되지는 못하고 있다.

병설유치원은 3학급 이상이 되어야 독립원감이 배치된다. (병설유치원 원감 A)

교육청의 전담원감 배치기준은 병설 3학급 이상 원아 60명 이상인 경우이나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유치원에 전담원감에 배치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유치원 중 일부에 전담원감이 배치된다. 단설은 전담원장 및 원감이 100%이지만, 병설은 일부에만 전담원감이 배치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A)

시·도 교육청에서도 병설유치원에 전담원감 배치를 확대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문제로 제약이 있게 된다.

유아교육과에서는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에 전담원감 배치를 확대하는 것을 바라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문제로 인사과에 의견 반영이 어렵다. (교육청 장학관 C)

병설유치원에 전담원감 배치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지 않아 전담원감 배치 확대를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에 전담원감 배치가 바람직하지만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지 않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H·L, 장학사 K)

전담원감 정원은 교육부에서 TO를 주고 있다. 전담원감 정원 확대를 교육부에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에 전담원감 배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육부에서 TO를 확대해 주지 않으면 시·도 교육청에서 확대할 수는 없다. (교육청 장학관 I)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에 전담원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직위조정이 필요한데 직위조정이 아직 안되고 있다. 교육부에서 원감 TO가 내려와야 한다. (교육청 장학관 J)

원감 정원이 확대되어야 전담원감 배치 확대가 가능하다. (교육청 장학관 L)

3) 전담원감의 업무특성

전담원감이 있는 병설유치원도 원장은 초등학교 교장이 겸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겸임원장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독립원감으로서의 업무 특수성이 있다. 교장이 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나 비전문이다 보니 원감이 원장처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병설유치원 원감 A)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달리 배움터 지킴이가 별도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원감이 배움터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초등학교 행정실의 원활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건교사, 행정직원 역할을 해야 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병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보다 학급 수가 적지만 상대적으로 전담원감이 해야 하는 업무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단설에는 지킴이가 다 있으나 병설에는 없어서 원감이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한다. 원감이 보건교사, 행정직원 역할도 하게 된다. 학급 수가 작아서 단설보다 업무가 많지는 않지만 해야 되는 직무가 다양하다. (병설유치원 원감 A)

4) 전담원감의 입장

전담원감은 관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과도 입장이 다르고 초등학교 교장이 겸임하는 겸임원장과는 다른 입장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병설유치원의 전담원감은 단설유치원 원감보다 외로운 위치라고 할 수 있다.

관리자와 교사는 같은 곳을 보고 가야 한다. 독립원감은 교사들과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외로운 입장이다. 유치원 내에서 갈 곳이 없다. 관리자이기 때문에 교사들과 입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병설유치원 원감 A)

원감실에서 1일 1번 티타임, 1주일 1번 정기회의를 한다. 원감이 교무실을 같이 쓰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교사들의 자율적 움직임을 보장하는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감실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병설유치원 원감 A)

원감이 된지 6개월이 되었고, 승진하고 원감으로 처음 오게 되었다. 원장이 독립적으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 (병설유치원 원감 A)

5) 전담원감이 없는 병설유치원의 교사

3학년 이상 병설유치원의 경우 전담원감이 올 수 있으나 그보다 학급 수가 작은 1-2학년 병설유치원의 경우 전담원감이 올 수 없다. 이런 경우 교사가 실제적으로 원장 및 원감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겸임원장 및 원감은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위임하여 결재만 하는 정도로 관리를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전담원감이 없는 병설유치원의 경우 겸임원장 및 원감의 간섭이 적기 때문에 체계적인 운영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전담원감이 있을 때보다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속해 있으나 실제로는 초등학교와 분리되어 있다. 1학년 유치원의 경우는 교사가 원장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병설 1학년만 있는 경우 겸임원감은 교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겸임원감은 결재 받는 정도로만 관리를 하게 된다. (병설유치원 교사 A)

겸임원감은 유아교육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이 상담이 어렵다. 겸임원감이 있을 때 교사는 오히려 자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체계성은 떨어질 것이다. (병설유치원 교사 A)

겸임원감은 초등학교의 교감이 원감을 겸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초등교육의 시선으로 유치원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은 교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겸임원감의 경우 너무 초등학교의 시선으로 보는 것은 유치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수업장학 등을 초등학교의 시선으로 접근해서 질서 지킴을 강요하는 것 등이 있다. (병설유치원 교사 B)

반대로 전담원감은 체계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지만 겸임원감에 비해

교사업무에 대한 관여가 많을 수 있다.

독립원감은 교사업무관여가 많다. (병설유치원 교사 C)

6) 전담원감에게 요구되는 행정업무 전문성

병설유치원 교사의 입장에서 원감은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예산 및 유아학비 업무가 행정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원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러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원감은 예산 및 학비관련 업무에 있어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사가 관리자라 되려면 행정업무 연수가 필요하다. (병설유치원 교사 C)

병설유치원이 단설유치원과 행정 지원체계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은 단설유치원은 전담원감 및 독립된 행정실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비해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교감이 원감을 겸하는 겸임원감이 일반적이고 독립된 행정실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행정실의 행정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병설이 단설과 다른 점은 전담원감보다 겸임원감이 일반적이고 행정 일반직은 초등학교에서 겸임한다는 것이다. (교육청 장학관 A)

7) 부장교사의 역할

3학년 이상이지만 전담원감이 없는 병설유치원의 경우 부장교사가 사실상 원감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겸임원감은 전담원감과 달리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치원 업무에 대해 모두 설명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현재는 부장교사가 원감 역할도 하고 있다. 전담원감은 유아교육 전공자이므로 대화가 잘 되지만 겸임원감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병설유치원 부장 교사 A)

그러나 부장교사는 전담원감과 달리 학급담임도 맡게 된다. 이런 점에서 관리 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전담원감이 있을 때에 비하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부장교사가 학급담임도 맡고 있다. 그래서 관리만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은 다

른 유치원도 마찬가지이다. (병설유치원 부장교사 A)

나. 교무행정지원사 배치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무행정지원사를 병설유치원에 배치하고 있다. 교무행정지원사는 비정규직으로 교육공무직으로 분류된다. 교무행정지원사는 유아 학비 처리 및 정보 공시 등의 유치원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경감시켜준다는 점에서 교무행정지원사에 대한 일선 유치원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교사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할 경우 오전 수업시간에는 행정업무가 처리되기 어려우나 교무행정지원사가 행정업무를 처리할 경우 오전 수업시간에도 행정업무가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교무행정지원사는 초등학교 행정실의 일반직 행정직원과 달리 비정규직이므로 상대적으로 배치가 용이하다.

현재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경우 예산 및 인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국공립 유치원에 교무행정지원사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교무행정지원사를 어떤 유치원에 배치할 것인가는 시·도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다. ① 교무행정지원사를 단설유치원에만 배치하는 경우 ② 병설유치원에 배치되던 전담원감이 배치된 유치원에는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지 않고, 전담원감이 없는 유치원에만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는 경우 ③ 단설유치원과 일정 학급수 이상의 병설유치원에 배치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전담원감이 없는 병설유치원에 배치하는 경우는 전담원감이 오면 해당 교무행정지원사를 다른 유치원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전담원감이 하는 업무는 관리에 중점을 두게 되고, 교무행정지원사의 업무는 일반 행정업무 처리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인력 및 예산이 허용하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전담원감이 있는 유치원에도 교무행정지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교무행정지원사와 소규모 학급 병설유치원

1학급만 있는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전담원감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교무행정지원사가 배치되면 교사에 대한 행정지원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학급 유치원은 오직 교사만 있어서 모든 업무를 해야 한다. 1학급은 교무행정 사에게 부탁해야 한다. (병설유치원 원감 A)

2) 교무행정지원사의 업무 특성

병설유치원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무행정지원사는 전담원감과는 또 다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볼 수 있다. 전담원감은 관리자의 측면에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면 교무행정지원사는 보조인력의 측면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유치원을 전담하는 교무행정사 또는 행정실무사가 필요하다. 행정지원을 하는 보조인력이 필요하다. (병설유치원 교사 A)

3) 교무행정지원사의 업무 범위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무행정지원사의 업무를 특정한 업무에 한정하기보다는 교무행정지원사가 특정한 업무 뿐 아니라 여러 종류의 업무에 다용도로 지원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유아학비, 정보공시,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는 것이다. 그만큼 교사의 행정수요가 다양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후술하듯이 업무분장을 둘러싼 교사와 교무행정지원사의 갈등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

단설은 구체적인 교무행정사 업무가 규정되어 있어 다른 업무는 안하려고 한다. 그러나 다용도로 쓸 인력이 필요하다. (병설유치원 교사 A)

교사에게 돌아가는 행정업무 부담은 유아학비 / 정보공시 / 놀이터 시설관리(소독)/ 통학차량 관련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병설유치원 교사 B)

유아학비 업무의 경우 2015년 이후 공립유치원에 교무행정지원사가 배치되면서 교무행정지원사가 배치된 유치원에서는 이들이 유아학비 업무를 다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A)

정보공시 및 교육통계도 행정지원사 업무이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교사들이 교무행정지원사에게 바라는 업무 중에는 유치원 행사 관련 지원이 있었다. 이는 유치원 행사가 자주 열리고 그에 따른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유치원은 행사가 많은데, 교무행정사와 안전인력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에 교무행정사가 2명이 있는데 유치원 행사는 도와주지 않는다. (병설유치원 교사 C)

4) 교무행정지원사와 행정실 일반직 직원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은 유치원을 위한 행정실 일반직 직원을 늘리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병설유치원 행정지원을 위해서는 교무행정지원사가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행정사처럼 교육공무원 1명, 행정사 1명이 바람직하다. 일반직 2명은 어려울 것이다. 단설은 학비지원 행정사, 병설 1학급은 행정사 1명이 있으면 좋을 것이다.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

5) 교무행정지원사의 배치 목표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무행정지원사를 병설유치원에 배치하고 있고 공립유치원에 전면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교무행정지원사는 2015년부터 유치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병설유치원에 배치되고 있는데 올해 97명이 배치되었다. 내년에는 공립 전면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A)

6) 교무행정지원사에 대한 유치원 만족도

해당 교육청에서는 교무행정지원사에 대한 유치원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유아학비업무 처리 등에서 특히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면담에서도 유아학비 업무는 행정실 업무 중에서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행정업무에 큰 부담이 되는 유아학비 업무를 교무행정지원사가 처리하기에 유치원의 교무행정지원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무행정지원사에 대한 유치원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특히 유아학비업무 처리 등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 (교육청 장학관 A)

7) 교무행정지원사의 배치 기준

교무행정지원사의 배치 기준은 시·도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다.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전담원감이 없는 병설유치원에만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고 단설유치원은 전담원감이 있다는 이유로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교무행정지원사는 전담원감이 없는 병설유치원에 배치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A·C)

그러나 면담을 한 단설유치원 원장은 장기적으로는 교무행정지원사가 단설유치원에도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해당 교육청에서도 앞으로는 공립유치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전면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설유치원에는 현재 교무행정지원사가 배치되지 않는다. 교무행정지원사는 2015년에는 15명, 2017년에는 97명이 배치되었는데, 전담원감이 있는 곳에는 배치되지 않는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단설유치원 원장 B)

단설유치원에도 행정지원사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 교무행정지원사, 교무행정사, 행정지원사는 모두 같은 개념이다. 교육실무사는 보조인력인데 유치원당 1명이 배치된다. (단설유치원 원장 B)

그에 비해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반대로 단설유치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고 병설유치원에는 배치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교무행정지원사는 단설유치원에는 배치하고 있으나 병설유치원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교육청 장학관 B·D·E·H·J)

교무행정지원사가 단설유치원에만 배치되고 병설유치원에는 배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행정실에 병설유치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사가 추가로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교무행정사는 초등학교에는 2명이 배치되고 단설유치원에는 1명이 배치된다. 병설유치원 업무는 초등학교 교무행정사가 겸임하기 때문에 병설유치원만을 위한 교무행정사 배치를 따로 요구하기 어렵다. (교육청 장학관 D)

또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단설유치원에는 비록 독립된 행정실이 있으나

행정직원의 수가 부족하기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한다고 응답하였다.

단설유치원의 경우 독립된 행정실이 있으나 행정직원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무행정지원사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 4학급 이상 병설유치원에는 초등학교 행정실에 교육공무원인 유치원 담당 행정직원을 배치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H)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지 않기도 한다.

현재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고 있지 않다. (교육청 장학관 G-I)

현재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지만 유아교육법 개정 방향에 따라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할 수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현재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고 있지 않으나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교무행정지원사에 관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교무행정지원사가 배치될 수 있다. (교육청 장학관 I)

현재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배치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 이유로는 교무행정지원사가 초등학교 행정실에 배치되면서 병설유치원 행정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병설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무행정지원사가 배치된다면 초등학교 행정실이 아니라 병설유치원 교무실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교육청에서는 교무행정지원사 배치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예전에는 4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였으나, 초등학교 행정실로 배치되면서 병설유치원 업무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행정업무를 같이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되면 병설유치원 업무를 지원한다는 본래의 목적이 희석되게 되므로 교무행정지원사 배치를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교무행정지원사가 배치된다면 초등학교 행정실이 아니라 병설유치원 교무실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교육청 장학관 F)

교무행정지원사가 단설유치원과 일정 학급 수 이상의 병설유치원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단설유치원에 배치될 때에는 단설유치원 행정실에 배치되지만 병설유치원에 배치될 때에는 병설유치원 교무실 또는 초등학교 행정실에 배치된다. 그중에서 초등학교 행정실에 배치될 때에는 교무행정지원사의 업무분장이 병설유치원 전담 지원이 아니고 초등학교 행정업무도 같이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무행정지원사는 교육공무직에 속하는데 단설유치원에는 원당 1명씩 배치되나 병설유치원에는 일부만 배치되어 있다. 병설유치원을 지원하는 교무행정지원사는 병설유치원 교무실 또는 초등학교 행정실에 배치된다. 병설유치원에서는 교무행정지원사의 업무가 유치원 전담 업무가 아닌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교무행정지원사의 업무분장은 학교장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교육청 장학관 L)

교무행정지원사가 단설유치원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아학비처리를 여러 명의 교직원이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공시 및 교육통계도 교사와 행정직원이 나누어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은 전담원감과 교무행정지원사가 하는 업무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전담원감이 있어도 교무행정지원사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교사와 행정직원의 업무 부담이 줄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아학비처리는 현재 3명이 나누어 하고 있는데, 급식비는 영양사, 교수학습자료비는 교사, 유아학비지원카드는 주무관이 나누어 하고 있다. (단설유치원 교사 A)

정보공시는 정보담당교사가 담당하고, 교육통계는 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일치가 안 되면 다시 해야 한다. 일치해야 시스템에서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설유치원 행정실장 A)

행정업무가 간소화되지 않으면 교사는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행정업무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계획안이 부실해진다. (단설유치원 원장 B)

전담원감이 없는 병설유치원에만 교무행정지원사가 배치되는 경우 면담을 한 병설유치원의 교무행정지원사도 전담원감이 배치되어 교무행정지원사가 다른 유치원으로 가게 되면 그 행정업무 부담은 교사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독립원감이 오면 행정지원사가 빠지게 된다. 한 유치원에 독립원감과 행정지원사가 모두 배치되지는 못하게 되어 있다. 행정지원사를 빼면 행정업무 부담이 교사에게 돌아간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내년에 전담원감이 올 예정인데 그러면 행정지원사는 다른 곳으로 갈 예정이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8) 교무행정지원사의 업무 분장

교무행정지원사의 업무는 유아학비 및 정보공시 업무 등을 하게 되어 있으나 유치원마다 업무분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특히 업무분장에 없는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교사 및 유치원 관리자들이 교무행정지원사에게 다양한 업무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후술 하듯이 업무분장을 둘러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유치원 재정, 기안, 주문, 결재를 행정지원사가 담당한다. 초등학교 행정실 컴퓨터에서 결재를 하게 된다. 유아학비 업무는 교무행정지원사가 담당한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이 유치원에서 행정지원사의 업무는 행정 70%, 교무 30%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유치원의 행정지원사는 교무의 비중이 높다고 들었다. 교무에는 가정통신문, 금요일 프린트, 급식차 가져오기, 교무실 및 반 청소 등이 포함된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올해는 작년보다 더 버겁다. 추가업무가 내려오는데 업무분장에 없는 업무가 내려온다. 교감이 할 일을 행정지원사가 한다. 유치원 교사 신분확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9) 교무행정지원사와 초등학교 행정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도 초등학교 행정실과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되지만 초등학교 교무행정지원사 역시 병설유치원의 업무를 추가적인 부담으로 인식하여 업무관련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행정지원사와 협조가 되지 않는다. 교류가 없다. 유치원은 알아서 하세요 하는 느낌이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유치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무행정지원사와 초등학교 행정실의 관계도 협조가 잘 되지 않고 불화가 있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행정실에서 행정지원사를 잘 챙겨준다. 이 유치원은 행정실과 행정지원사와의 관계가 화목하나 다른 유치원은 불화가 있는 경우가 많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10) 교무행정지원사와 전담원감

전담원감은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지만 교무행정지원사는 다양한 행정실무

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교무행정지원사가 직접적으로 행정업무 부담을 덜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밀의 직원 입장에서는 전담원감보다 행정지원사가 더 좋다. (병설유치원 교무실 무사 B)

다. 초등학교 행정실과 유치원의 관계

1) 초등학교 행정실의 유치원 업무 인식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행정실의 입장에서는 유치원 행정업무는 추가적인 부담이라는 인식이 있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안에 설치되어 있으나 같은 학교에 속해있다는 인식이 덜하다 보니 행정실의 입장에서도 초등학교 업무에 비해 경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행정실 직원은 친절하다. 경기도 근무 시에는 행정실장이 교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많았다. 유아교육은 초등학교에서 경시된다. (병설유치원 원감 A)

초등 행정실은 우리라는 느낌이 덜하다. 초등이 주가 되다 보니 행정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부탁을 해야 한다. 그래도 들어줄 동 말 등 한다. (병설유치원 원감 A)

2) 병설유치원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유치원 업무를 추가적인 부담으로 인식하다 보니 기본적인 업무 이외의 행정업무는 교사에게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

행정실 직원들은 유치원 업무는 안 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출만 도와준다. 하모니 지출 업무도 교사가 다하고 행정실에서는 집행만 도와준다. 주사(주무관)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텃밭관리 등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구 가는 것도 교사가 해야 한다. (병설유치원 교사 A)

행정실에서는 유치원 지원 업무를 유치원 교사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교육청 장학관 A)

3) 초등학교 행사 참여

유치원 교사들은 초등학교 행정실 뿐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들도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같은 학교에 소속해 있다기보다는 별개의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에서 하는 행사 및 교직원 연수에 유치원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행정실보다 같은 교사들끼리도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별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안전교육의 경우 유치원은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1학년 유치원의 경우 안전교육을 이층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을 다른 학년이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초등학교에는 많다. (병설유치원 교사 B)

초등학교 연수에 청탁금지법 연수가 있는데 유치원 참석자 명단 요청이 오지 않았다. 그냥 가니 유치원 참석자 명단이 없다고 한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같은 초등학교에 속해 있는데도 초등학교 행사에 끼기 어렵다. 교직원 연수에 가도 자리가 없다. (병설유치원 교육실무사 B)

4) 유치원 행사 지원

유치원 교사가 느끼는 불평등은 초등학교 행사는 병설유치원 교직원들도 도와주어야 하지만 유치원 행사를 할 때는 초등학교 교직원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행사에는 유치원 교사가 지원하지만(전 교직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유치원 행사는 초등학교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병설유치원 교사 C)

5) 유치원 행정인력 지원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관계에서 유치원이 행정지원 인력에서 후순위로 밀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몇 년 전에 30여명의 일반직을 병설유치원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에 보내었으나 초등학교 교장들이 병설유치원 뿐 아니라 초등학교 지원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병설유치원 근무를 명함이라고 인사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근무를 명함이라고 인사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단설유치원 원장 A)

라.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 분리

병설유치원 관계자들 중에서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을 별도로 분리하여 그 행정직원이 유치원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초등학교 행정직원들은 병설유치원 업무를 부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유치원 교직원들이 초등학교 행정실에 행정업무 지원을 요청하기가 어렵고 유치원 교사들에게 행정업무 부담이 돌아간다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을 분리한다면 유치원 교직원들이 행정실에 행정업무를 요청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을 분리할 경우 업무분장 배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치원 행정업무가 해당 직원 1명에게 쏠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특정 직원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을 분리하는 것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을 초등학교 행정실로부터 분리하는 것보다는 교무행정지원사를 병설유치원에 배치하고 초등학교 행정실과 협조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1)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 필요성

병설유치원 교사에게서 초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유치원을 전담하는 독립된 행정직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병설유치원의 행정업무를 부가적인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들이 행정실에 지원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한다.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에게 업무를 요청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유치원을 전담하는 독립된 행정직원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병설유치원 교사 A)

병설유치원은 유치원 전담 행정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설유치원 원장 A)

유치원 행정전담인력이 분리되면 유치원 교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 행정직원에게 요청하기가 좋기 때문이다. (교육청 장학관 A)

2)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 업무처리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의 입장에서는 유아학비 처리와 같이 부담이 큰 업무에 대해서는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이 담당하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행정실 업무의 반 이상은 유치원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아학비 업무가 매우 크다. 유아학비 지출은 연간 1억이 넘는다. 학교운영비보다 유아학비가 더 많다. 작은 학교보다 큰 학교는 예산이 많아 행정실 업무가 더 어렵다.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이 1명 있으면 지출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

3)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 업무과중 문제

그러나 행정직원 1명이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유치원 관련 업무를 그 1명에게 모두 전가하여 1명의 직원에게 업무과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렇게 되면 업무분장을 둘러싸고 교직원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직원 1명이 독립되어 있으면 초등 행정실에서 모든 업무를 1명에게 돌리고 자기들은 안 해줄 것 같다. 1명에게 업무과중이 발생할 것 같다. (병설유치원 원감 A)

유치원 행정전담인력을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분장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업무분장을 통해 행정실 직원의 업무를 나누게 되는데 봉급, 성과상여금, 물품지출 등이 연관된다. 업무분장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한 사람에게 업무량이 쏠리게 되는 경우인데 유치원 행정전담인력을 분리하면 그 사람에게 유치원 행정지원 업무가 쏠릴 수 있어 업무분장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유치원 행정전담인력 분리는 사실상 실현이 어렵다고 본다. (교육청 장학관 A)

마. 행정실 직원 겸임수당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이 병설유치원 원장 및 원감을 겸임할 경우 겸임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행정실장을 비롯한 행정직원들에게는 이러한 겸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최근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초등학교 행정직원의

유치원 업무 겸임 근거규정이 만들어 졌으나 아직 수당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행정직원들에 대한 겸임수당은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병설유치원 행정지원 업무를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실 직원들에 대해 겸임수당을 지급한다면 행정실 직원들이 유치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정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실 직원들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한다면 행정실장 뿐 아니라 실제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도 겸임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1) 행정실 직원 겸임수당 필요성

병설유치원 교사로부터 행정실 직원들의 유치원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실 직원에 대한 겸임수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 수 있었다.

겸임수당은 겸임원장 및 겸임원감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행정실 직원은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한다. 행정실 직원들의 책임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실 직원 수당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병설유치원 교사 A)

행정실장에게 별도의 수당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정집행은 교사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병설유치원 교사 B)

초등학교의 행정지원인력 3명에 대해서는 겸임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단설유치원 원장 A)

행정직 겸임수당은 병설유치원 교사들이 요구하여 논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청 장학관 B)

병설유치원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겸임수당 문제는 교총 교섭안 등에서 수십년째 논의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도 확정된 것이 없다. (교육청 장학관 F)

2) 행정실 직원 겸임수당 적용 범위

현재는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이 병설유치원 원장 및 원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교장 및 교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행정실장을 비롯한 행정실 직원들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 수 있었다.

초등학교 교장·교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행정실장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실장 뿐 아니라 초등학교 행정실의 시설주무관, 비정규직, 보건교사 등 실제 업무를 하는 인력에게 겸임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필요하다. (단설유치원 원장 A)

행정실 직원들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한다면 행정실장에게만 한정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유치원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겸임수당은 행정실장 뿐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직원에게도 지급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

행정직 겸임수당이 지급된다면 행정직원 뿐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원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 (교육청 장학관 F)

3) 행정실 직원 겸임수당 근거규정

행정직원에 대한 겸임수당은 계속 논의는 되어 왔으나 근거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유치원 업무 겸임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수당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직원에 대한 겸임수당은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직원의 겸임수당은 최근에 말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

행정직원 겸임수당의 근거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실 불만이 크다. (교육청 장학관 A)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겸임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수당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직원 겸임수당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청 장학관 A)

행정직 겸임수당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논의 중에 있다. (교육청 장학관 C)

행정직 겸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3년 전에 추진하였으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교육청 장학관 D)

행정실 직원 겸임수당은 교육감 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교육부에 건의하였고 법개정이 발의된 상황이다. 교육청에서도 행정직 겸임수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유아교육법이 개정된 이후에 가능하다. (교육청

장학관 H)

행정직원 겸임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와야 한다. 현재는 관련 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올 수 없다. (교육청 장학관 J)

행정직 겸임수당 도입은 찬성하는 입장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는 없고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추진할 수 있다. (교육청 장학사 K)

4) 행정실 직원 겸임수당 기대효과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직원에 대한 겸임수당이 지급된다고 해도 월 몇 만원에 불과한 수당으로 유치원 행정업무 지원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유치원 업무를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부담으로 인식하는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당 몇 만원 때문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교육청 장학관 A)

바. 초등학교 행정실과 독립된 행정시스템

1) 독립적인 행정시스템의 필요성

초등학교 행정실로부터 병설유치원이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유치원 교직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단설유치원과 같이 병설유치원도 독립된 행정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이 있는 것보다 더 나아가 병설유치원을 위한 별개의 행정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병설유치원은 찬밥신세이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준다는 취급을 받는다. 행정실 분리 없이는 그런 것들이 계속될 것이다. 병설유치원은 별당아씨 취급을 받는다. (병설유치원 원감 A)

교장, 교감이 있어도 병설유치원은 귀찮은 존재이다. 병설유치원만의 행정실이 필요하다. 행정직원이 독립적인 것은 의문이다. 행정실장의 결재가 나와 하기 때문이다. (병설유치원 원감 A)

2) 행정실장의 결재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유치원 원장 및 원감의 결재를 받는 별도의 행정시스템이 병설유치원에 필요하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유치원 행정시스템 분리가 필요하다. 초등행정실장 안거치고 원장, 원감 결재 받는 별도의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 (병설유치원 원감 A)

3) 교무실에서 행정실 분리

그 외에도 단설유치원과 달리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별도의 행정실이 없고 교무실만 있는데 교사, 에듀케어 강사, 교무행정지원사, 교육실무사가 모두 한 교무실에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교무실에서 행정실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단설은 별도의 행정실이 유치원 소속으로 있으나 병설은 교무실만 있다. 행정실이 분리되면 좋겠다. 교사, 실무사, 에듀케어 강사, 행정지원사 모두 교무실에 있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실무사 A)

4) 행정실 독립의 실현 어려움

그러나 1학급이 있는 병설유치원처럼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실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한편 병설유치원의 행정실을 별도로 분리시키려면 초등학교 행정실에 배치된 일반직 직원도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데 현재의 인원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병설유치원이 1학급인 경우는 행정실이 독립하기 어렵다. (병설유치원 원감 A)

병설유치원의 행정실을 별도로 하려면 일반직도 따로 가야 한다. 그러나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울 것이다.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A)

공과금, 시설 개보수 등에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사용함에도 유치원 예산으로 떠넘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행정실장 결재를 필요로 하다 보니 유치원 교원의 생각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초등학교 행정실의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행정실장의 결재를 받지 않는 행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행정실장 결재와 독립된 행정시스템이 가능한가? 행정실장이 아니라 원장 및 원감이 하는 결재가 가능한가? 예를 들어 공과금 문제가 있는데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계량 분리가 어렵다. 학급 수 대비, 아동 수 대비 기준으로 유치원에 공과금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시설예산은 유치원 예산을 행정실에서 좌지우지한다.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인데도 유치원 예산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시설 개보수를 유치원 예산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실장 결재를 득하다 보니 유치원 교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교육청 장학관 A)

행정실 업무 지원을 받으면서 행정실장 결재를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교육청 장학관 A)

사. 공문 공람

행정지원과 관련하여 병설유치원 교직원들이 느끼는 불편 중 하나는 초등학교에 오는 공문이 병설유치원에 공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문이 공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 교직원의 입장에서는 모든 공문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고 기안 제출 기한이 임박하여 공문을 발견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유치원에 공문을 공람하게 하고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공문이 아니라면 유치원도 같이 수신처로 잡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공문 공람 부재의 불편

병설유치원 교직원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에 오는 공문이 유치원에 공람이 안 되어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기안 제출 기안이 다 되어서 공문을 발견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불편을 들 수 있었다.

공문이 공람이 안 되고 교장, 교감에서 끝난다. 공람이 안 되어서 놓치는 경우 많다. (병설유치원 원감 A)

초등과의 연계 시스템은 행정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공람 안 되는 점이 문제가 있다. (병설유치원 원감 A)

행정 공람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초등학교에만 공람이 되어서 기안 제출 기한이 임박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병설유치원 교사 B)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공문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교육지원청을 통해 SNS

로 공문에 대한 연락을 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I)

현재는 공문을 줄여나가는 추세이고, 공문계시판을 통해서 전체 공지를 하기 때문에 공문이 공람되지 않는 경우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에 보내야 할 공문을 누락하는 것은 발생할 수 있다. (교육청 장학관 N)

2) 공문의 병설유치원 명시 여부

초등학교에 오는 교육청 공문 자체에서도 병설유치원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유치원에 공문을 공람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공문에 유치원 포함여부 명시가 불분명한 경우 유치원 교직원 입장에서는 관련 문서를 모두 찾아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도와주는 분들은 잘 도와주지만 교육청 공문에서 병설유치원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관리자 몇 명이 참석하라고만 되어 있고 유치원 포함 여부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는 것이다. (병설유치원 교사 A)

공문에 유치원 포함여부가 정확히 명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서를 모두 찾아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병설유치원 교사 C)

유치원이 공문에 명시될 경우 시설, 설비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단설유치원에서는 행정실로 가게 되지만 병설유치원은 독립된 행정실이 없기 때문에 교사에게 공문이 배부되게 된다. 유치원이 공문에 들어가면 모두 교사에게 공문을 배부한다. 예를 들어서 시설 현황 등이 있다. 이런 경우 시설, 설비를 모두 교사가 하게 된다. (병설유치원 교사 A)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로 보내는 공문의 유치원 공람 문제는 내년부터 공문에 유치원을 명시할 예정이다. 공문 제목에 유초중고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다. (교육청 장학관 B)

공문 공람 문제는 병설유치원을 초등학교의 학급이 아닌 별개의 기관으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병설유치원은 별개의 기관이지만 초등학교의 학급으로 보는 인식이 있다. 병설유치원에 따로 공문을 보내지 않고 초등학교에만 공문을 보내는데 행정직 경임수당 문제 때문에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협조를 안한 적이 있었다. 현재는 업무포탈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E)

유치원 교원 관련 공문은 항상 유치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목에 유초중고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교육청 장학관 J)

3) 공문의 병설유치원 수신처 명시

일부 교육청에서는 과거에 행정실 직원 업무 소관 공문은 병설유치원을 수신처로 잡지 말 것을 정책으로 시행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자 유치원에 공람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양쪽을 모두 수신처로 잡도록 정책이 변화하였다.

행정문서 공람에 대해서는 몇 년 전까지는 행정실 직원 위주의 정책을 시행했었다.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문서를 접수하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게 된다. 교육청에서는 행정실 직원 업무 효율화를 명분으로 행정실 직원 업무 소관 공문은 병설유치원을 수신처로 잡지 말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되자 서로 공람을 하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공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교육청 장학관 A)

유치원도 반드시 공문의 수신처로 잡으라고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 반드시 수신을 양쪽 다 잡아야 한다. 병설유치원은 규모에 관계없이 독립된 기관이므로 반드시 수신처가 되어야 한다. 행정실 업무는 양쪽 다 수신처로 잡지 말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으나 공람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공람이 안 되는 공문은 양쪽을 수신처로 잡도록 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A)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로 가는 공문이 병설유치원에 공람이 안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관코드에서 유치원을 독립시켜서 공문을 보내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F)

4) 교무행정지원사와 공문 공람

병설유치원의 교무행정지원사에게서도 초등학교의 공문이 유치원으로 오지 않거나 공람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유치원은 초등학교의 공문이 공람이 되지 않는다. 초반에는 유치원으로 공문이 아예 오지를 않았다. 중학교에 근무할 때는 공람이 되었었는데 유치원에서는 공문이 공람이 되지 않는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초등학교 행정실장도 유치원에 공문을 공람해주지 않는다. 지금은 유치원 공문은 공람을 받고 있다. 공문 공람이 잘 안되거나 에듀파인 예산을 행정실장이 잘 보내 줄 때가 있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5) 공문 공람에 대한 안내

시·도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 연찬회 등의 행사에서 유치원 공문 공람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공문 공람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없으나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 연찬회 때 공문 공람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D)

유초중고 관리자가 모이는 행사가 있을 때 공문의 병설유치원 공람을 안내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G)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 연수 때 유치원에도 공문을 공람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H)

원감 및 교감 협의회에서 직무연수 시 유치원 공문 공람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다. (유치원 장학관 J)

아. 업무분장 개선

교무행정지원사는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면서 업무분장을 둘러싼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업무의 한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자신의 업무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유치원 교사가 교무행정지원사에게 요구하는 업무가 업무분장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방과후 과정 교사와는 같은 교육공무직 사이인데도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업무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무행정지원사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 교무행정지원사의 업무 분장

행정지원사 업무는 업무분장에서 A4 용지 1페이지가 가득 차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는 2페이지가 넘어갈 정도이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교무행정지원사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조인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정교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보조인력으로 생각하게 된다. 업무분장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유치원 정교사는 교

무행정지원사를 자신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인력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업무를 요구하게 되면 업무분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지원사 입장에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평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교무행정실무사로 근무하면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교사가 보기에 너희는 비정규직, 보조로 왔으므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선이 확실하지만 그 선은 아닌 것 같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2) 업무분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무행정지원사가 교사를 지원했을 때 교사는 이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업무부담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유치원에서는 이 일만 하면 끝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 도움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가 잘못 받아들인 것이라고 반박이 들어온다. 전에 이렇게 해왔으니 지금도 그대로 하라는 것이 많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교무행정지원사와 업무분장을 둘러싼 갈등은 유치원 정교사와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방과후 강사와 같이 같은 비정규직 간에서도 갈등이 발생한다.

방과후 강사도 같은 비정규직인데 방과후 강사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어딜 가나 동료와의 관계는 어려운 것이지만 같은 교육공무직 사이에도 갈등이 있다. 같은 교육공무직이라도 실무사보다는 행정지원사가 방과후 강사와 같은 공간에 오래 있게 된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이러한 교육공무직 간의 갈등 역시 교무행정지원사의 업무분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업무의 한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교무실에서 큰 소리가 난 적이 있다. 화를 못 이겨서 에듀케어 강사와 싸웠다. 다름은 인정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경우는 답답하다.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 경우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에듀케어 업무를 행정지원사가 도와줘야 하는 경우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다른 유치원에서는 에듀케어 강사가 교실로 가나 이 유치원에서는 오전 내내 교

무실에 있어 행정지원사와 부딪힐 수 있다. 에듀케어 강사가 행정지원사에게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공고문 올리라고 요청하였고 행정지원사로 나이스로 올리라고 응답하였다. 에듀케어 강사가 행정지원사 컴퓨터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음날에 유아교육법을 들먹이며 행정지원사에게 해달라고 하였다. 유아교육법에 공고문을 행정지원사가 올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을 찾지 못하였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에듀케어 강사의 경우 유치원 정교사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입장이다 보니 정교사와 같은 대우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교무행정지원사에게 정교사와 마찬가지로 업무 지원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분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에듀케어 강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별도로 근무를 하게 된다. 에듀케어 강사는 자격증이 있는 교사이나 기본과정 교사와 완전히 다르다. 교사이나 교사가 아니다. 경기도에서는 돌봄사라고 불린다. 부모가 에듀케어 강사에게 원하는 것도 교육보다는 돌봄이다. 에듀케어 강사는 자기들도 무시당했다고 생각한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3) 업무분장 갈등을 해결하는 시스템 문제

교무행정지원사와 다른 교직원 사이에서 업무분장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할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갈등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작년에 갓 발령 받아서 다른 에듀케어 강사와 갈등이 생겼다.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언성이 높아졌다. 결국 교장실까지 불려가게 되었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업무분장에 따라 일을 하면 부딪칠 일이 없다고 하니 그건 안 된다고 한다. 행정지원사가 다른 직종과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다. 조정할 사람이 없어서 교장실에 가게 된다. 관리자는 무조건 한쪽이 참으라고 한다. 행정지원사가 어리니 참으라고 한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행정지원사들은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업무분장을 둘러싼 갈등이 매우 많다. 행정지원사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는 대부분 업무분장에 관한 갈등에 관한 내용이다. 연수를 가면 불만들이 돌까 봐 1박 2일 연수를 안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4) 업무분장 상 업무 한계

이러한 갈등은 업무분장에서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교무행정지원사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유치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업무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발생하게 된다.

업무분장에서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디까지 교무이고 어디까지 행정인가가 너무 애매하다. 누구는 교무일이라고 하고 누구는 행정일이라고 한다. 경계가 너무 애매하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업무 분장 관련 갈등이 매우 많았다. 교육청에서 교육을 받고 온 분들인데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업무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많다. 업무의 라인이 분명하지 않다. (병설유치원 부장교사 A)

5) 비정규직 간의 관계

교무행정지원사와 방과후 과정 교사는 같은 비정규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치원 정교사와의 관계에서보다 갈등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같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지원을 요청할 경우 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데 왜 그 요청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과 후 과정 교사는 같은 급이라서 갈등이 더 많은 것 같다. 7학급을 어디까지 커버할지 알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 행정지원사는 혼자라서 더 어려움이 있다. 교육청에서 행정지원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병설유치원 부장교사 A)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역할을 하지만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교장이 교육공무직을 모두 불러서 원래 이 업무는 정규교사 5명이 다 해야 하지만 그걸 못해서 행정지원사, 교육실무사, 방과후 과정 교사를 교육청에서 지원했다고 말했다. 정규교사를 지원하는 같은 급의 인력들 서로 간에 일을 시키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병설유치원 부장교사 A)

6) 유아교육의 특성

유아교육의 특성 상 교육과 돌봄의 구별이 불분명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초등교육에서의 업무분장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업무분장을 하기는 했으나 모든 교사에게 도움을 주도록 구분되어 있다. 행정지원사의 업무량이 매일 매뉴얼대로 똑같지는 않다. 이런 점에서 교사의 업무와 차이가 있다. 여기서 boundary에 따른 갈등이 발생한다. 유아교육은 보육/돌봄과 구분이 불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초등교육과 차이가 있다. (병설유치원 부장교사 A)

2. 단설유치원 행정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

가. 보건인력 지원

단설유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인력은 간호사로 나타났다. 단설유치원 원장들은 단설유치원에 가장 시급하게 배치되어야 하는 인력은 간호사라고 보고 있었다. 보건인력에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건교사도 있으나 보건교사를 단설유치원에 배치하는 유아교육법상 근거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법상 규정을 통해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단설유치원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유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단설유치원 배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단설유치원 보건인력 배치현황’에 따르면 2017년 3월 1일 기준 단설유치원 중 보건인력이 배치된 곳은 11.6%에 불과했으며, 시·도교육청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신문, 2017.10.12).

1) 단설유치원의 보건인력 배치 필요성

단설유치원은 행정실 및 급식실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으나 보건인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으며 병설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단설유치원은 영양관련 인력이 있으나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보건인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병설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유

치원 지원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단설유치원은 행정실 및 영양 관련 단독 인력이 있으나 보건인력이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교육청에서 단기적 순회인력 지원을 한 적이 있다. (교육청 장학관 A)

2) 단설유치원에 배치되어야 하는 보건인력

단설유치원에 어떤 보건인력을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 초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현재 유아교육법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렵고 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학교보건법상 유치원에 보건교사 배치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시·도 교육청별로 간호사를 배치할 것인가 보건교사를 배치할 것인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간호사 배치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가능하며, 간호사는 교육공무직으로 배치되게 된다.

단설유치원에서는 보건인력이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다. 보건교사를 지원할 것인가? 간호사를 지원할 것인가? 간호사 정도의 인력지원을 바라고 있다. 현재는 간호사 인력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A)

단설유치원 원장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력은 간호사이다. 간호사가 단설유치원에 배치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보건교사 지원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부 교육청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설유치원 원장 B)

단설유치원에 대한 보건인력 지원은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다. 단설유치원에 배치되는 간호사를 건강실무사라고 하는데 내년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육청 장학사 K)

단설유치원에 대한 보건인력 지원은 보건교사가 바람직하나 유아교육법상 근거 규정이 없다. 보건교사를 배치한다면 유치원 교원 증원문제가 발생하고, 간호사를 배치한다면 비정규직으로 배치하게 된다. (교육청 장학관 E)

유아교육법상으로는 단설유치원에 간호사 배치가 가능하다. 2015년부터 해당 교육청의 모든 단설유치원에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다. 단설유치원에 배치된 간호사는 교육공무직에 속하며 365일 보건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해당 교육청의 모든 단설유치원에는 간호사 1명, 교무행정사 1명씩이 배치되어 있다. (교육청 장학관 E).

보건교사 배치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기간제 교사로 배치하기도 한다.

단설유치원에 대한 보건인력 지원은 보건교사를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B)

해당 교육청의 단설 유치원에는 모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정식 임용은 아니고 기간제 교사로 배치하고 있다. 보건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장이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J)

변호사 자문을 거친 결과 단설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이고 교육공무직원은 늘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L)

3) 유치원과 초등학교 보건교사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병설유치원도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단병설 유치원에 대한 보건 인력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단설유치원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이다. (단설유치원 원장 B)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보건교사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보건교사협회의 입장이기도 한데, 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단설유치원 원장 B)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책임 소재 때문에 단설유치원에 보건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교육청 장학관 F)

나. 초등학교 수준 행정지원 인력 배치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과 달리 독립된 행정실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병설유치원보다는 훨씬 향상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행정실 직원의 수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단설 유치원은 7학급 이상인 경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도 교육청마다 차이는 있으나 행정실에 배치되는 행정직원의 수는 2-3명 정도이다. 이러한 행정직원 배치는 비슷한 규모의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의 수가 3-4명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인력과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장기적으로 단설유치원 행정지원 인력의 배치를 비슷한 학급

수를 가진 초등학교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행정실 직원을 늘리기 어렵다면 현재 병설유치원에만 지원되고 있는 교무행정지원사를 장기적으로 단설유치원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단설유치원 행정직원 배치기준

단설유치원 행정직원 배치기준은 시·도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는데 행정직원 TO가 적은 경우 행정실장 혼자 행정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단설유치원에 독립된 행정실이 있어도 행정직원의 수가 적은 경우 행정업무를 행정실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어 교사들에게 행정업무 부담이 돌아가게 된다.

단설유치원 행정직원 배치기준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은 일반직 2명씩 단설에 배치하는데 경기도는 단설 TO가 1명이라서 나홀로 실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세종시는 일반직 2명을 배치한다. (단설유치원 원장 A)

단설 TO는 행정실장 1명, 일반직 2명인데 주무관을 포함한다. 행정실장 직급은 7급이다. (교육청 장학관 A)

단설유치원의 행정실에는 일반직 2명, 시설직 1명이 있다. 행정실장은 일반직에 포함된다. 단설은 독립된 행정실이 있으나 행정인력이 부족해서 행정업무를 교사들이 분담해야 한다. (단설유치원 원장 B)

단설유치원은 독립된 행정실이 있지만 행정지원인력이 부족하여 유아학비지원까지 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단설유치원 원장 A)

단설유치원에 행정직원을 배치하는 기준을 학급 수로 할 때보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해당 교육청의 단설유치원 행정직원 수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해당 교육청의 유치중등학교 모두 학생 수라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행정직원의 수가 결정된다. 금년에 다른 시·도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학급 수를 기준으로 행정직원의 수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유치원이 불리해져서 원래대로 학생 수 기준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E)

2) 초등학교 6학급 기준 인력지원

단설유치원 행정실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슷한 학급 수를 가진 초등학교

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력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단설유치원이 7학급이라고 한다면 비슷한 학급 수를 가진 초등학교 6학급 기준으로 인력지원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단설유치원은 일반적으로 7학급이 많은데 교사 7명, 원장·원감 2명이 배치되게 된다. 초등학교 6학급 기준으로 단설유치원도 똑같이 인력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와 같은 급체계에서 동일한 인력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설유치원 원장 A)

경기도의 경우 단설유치원의 행정지원인력 배치 기준을 초등 6학급 기준과 같이 행정실장 외에 일반직 2명, 시설직 1명으로 할 필요가 있다. (단설유치원 원장 A)

그러나 단설유치원에 비슷한 규모의 초등학교 기준으로 행정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예산 및 정원의 문제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단설유치원에는 비슷한 규모의 초등학교 수준으로 행정직원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인력 부족 및 TO의 차이로 실행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행정직원 수당보다도 인력 확보가 더 중요하다. (교육청 장학관 B)

단설유치원에 비슷한 규모의 초등학교 수준으로 행정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당연히 바라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의 제약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 정원 관계 및 몇 급을 배치할 것인가 등은 인사수급관계 계획과 연동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청 장학관 D)

3) 유치원 인력지원의 불리함

시·도 교육청 인력배치는 총정원제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초등학교에 비해 유치원이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초등학교에 대한 인력지원에 비해 유치원은 인력지원에 있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인력배치는 총정원제가 적용되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500명을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초중등교육에 비해 유아교육이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다. 시·도교육청 인건비의 경우 총액인건비가 적용되게 되는데 유아교육이 초중등교육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유치원 차량지원비의 경우에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육감 재량으로 다른 곳으로 돌려서 쓰는 경우가 있다. (단설유치원 원장 A)

돌봄인력 지원에 있어서도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유치원에는 지원되

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유치원에서 야간돌봄은 8-9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야간돌봄 예산은 급식비 이외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인건비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혁신초등학교는 유치원과 달리 야간돌봄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야간돌봄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돈도 받고 점수도 받지만 유치원도 돈도 받지 않고 점수도 받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금은 돈은 받지 않지만 점수는 받고 있다. 유치원에서 야간돌봄은 수익자 부담으로 돈을 걷고 있다. (단설유치원 원장 A)

4) 학교 중심의 시스템에서 오는 불리함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이지만 공립유치원은 심의기구이므로 사립유치원은 발전기금을 받을 수 없으나 공립유치원은 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공립유치원이지만 공립유치원은 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단설유치원은 발전기금을 받을 수 없다. 단설유치원이 발전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 조달 등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사립은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이지만 공립은 심의기구이다.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인 사립에서는 발전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심의기구인 공립에서는 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다. 병설유치원은 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단설유치원에서는 발전기금을 받을 수 없다. (단설유치원 원장 A)

단병설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유치원이 초중등 학교 중심의 시스템에서 인력 지원 등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단병설 차이도 있지만 유치원이 학교체제에서 버텨나가기 쉽다. (단설유치원 원장 A)

다. 현장학습 지원인력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에 비해 학급 수가 많기 때문에 현장학습을 나갈 때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아이들을 인솔할 인력이 부족해서 외부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이들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현장학습 등 유치원 외부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학부모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었

으나 현재는 이러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현장 학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1) 단설유치원의 현장학습 지원 필요성

단설유치원은 학급 수가 병설유치원보다 많아서 외부활동을 할 때 안전관리 에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정교사 뿐 아니라 방과후 과정 교사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모든 학급이 다 같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병설 유치원에 비해 어려움이 있다.

현장학습을 갈 때는 1-2반은 방과후 과정 교사가 지원한다. 다 같이 갈 때는 안전관리가 어려워서 최소한의 인원만 데리고 가게 된다. (단설유치원 원장 B)

현장학습을 할 때 안전관리 인원이 부족해서 학부모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다. (단설유치원 교사 A)

단설은 버스를 5대 이상 대여해야 한다. 그래서 현장학습을 가기에 어려움이 있다. (병설유치원 교사 B)

자유롭게 뛰어 놀거나 현장학습을 가는 것은 유치원이 대형화되면 어려움이 있다. 2-3학급 병설이 가장 좋다고 본다. 1학급은 교사 혼자 해야 하니 어렵다. 1학급은 현장학습을 가려고 해도 인원이 적어 예약이 어렵다. (병설유치원 교사 A)

2) 단설유치원의 현장학습 지원 인력 채용

유치원 운영비를 지출해서 일당으로 외부인력을 채용해서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오게 되는 외부인력이 아이들을 모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자원봉사자 지원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인력이 부족해서 유치원 운영비를 지출해서 일당으로 외부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아이들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이 잘 되지 않는다. (단설유치원 원장 B)

과거에는 학부모 자원봉사에 의해 도움은 받았으나 현재는 그러한 도움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원봉사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엄마들이 자원봉사를 잘 해주었으나 지금은 그런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원봉사자 인력을 지원받을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자

원봉사자는 특수반 아이들을 돌보는데 한정되어 있다. (단설유치원 원장 B)

공립이기 때문에 인력채용에 제약이 많다. 예를 들어 성범죄 경력조치가 있는데 절차가 많을 수밖에 없다. (단설유치원 원장 B)

3. 단병설 유치원 공통 행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

가. 교사 추가 배치

공립유치원 관계자들 중에는 유치원에 행정지원 인력보다 교사를 더 많이 배치해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이유로는 교사가 더 배치될 경우 행정지원과 수업지원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치원 교사는 수업 뿐 아니라 행정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원보다 교사를 더 배치할 경우 행정지원과 수업지원이 모두 가능하므로 교사가 보결일 경우 등에 대체교사를 구할 필요가 없이 다른 교사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는 부담임제 등을 통해 1학급에 교사가 2명씩 배치될 수 있으나 공립유치원에는 이러한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공립유치원에 정교사를 더 배치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정원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담임 1명에 기간제 교사를 보조로 두거나,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고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유치원 정교사 추가 배치 요구

유치원에서 교사들도 행정업무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유치원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교사가 지원되면 행정지원 뿐 아니라 수업지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뿐 아니라 수업 부담도 줄일 수 있어 교사 보결 등의 경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행정업무를 할 때는 행정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 적다. 행정직원보다 교사를 지원해서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병설유치원 원감 A)

교사 근무 30년 동안 개인적으로 연가를 낼 수 없었다. 교사 수업이 대체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파도 연가를 쓸 수 없었다. 행정전담을 하는 잉여교사, 필요시 수업지원도 하는 잉여교사가 필요하다. 병설뿐만 아니라 단설유치원 원감들도 행정직원이 아니라 교사지원을 더 원한다. (병설유치원 원감 A)

행정직원 지원보다 교사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교사보결인 경우 다른 교사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설유치원 원장 A)

1학급은 독립된 보조인력을 안주려고 한다. 보조인력을 줄 수 없다면 정교사 2명이 필요하다. 수업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도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설유치원 교사 A)

2) 유치원 정교사 추가 배치의 어려움

그러나 부담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립유치원과 달리 공립유치원에서는 학급당 정교사 2명을 배치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고 학급 당 2명의 담임수당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정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은 공립유치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시되었다.

사립과 달리 공립에서는 1학급 당 2명의 담임수당을 줄 수가 없어서 2 담임일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병설유치원 교사 B)

1학급 2담임일 경우 담임역할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애매할 수 있다. (병설유치원 교사 C)

특수학급은 1학급 2담임을 하고 있으나 1명은 담임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교사 2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병설유치원 교사 D)

교사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정원을 줄여서 교사를 지원해야 하는데 공립유치원에서는 실행하기가 어려운 방안이다. 교사가 해야 할 업무와 행정직원이 해야 할 업무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교육청 장학관 A)

3) 기간제 교사 추가 배치

정교사를 추가로 지원하기 어렵다면 정교사 담임 1명에 기간제 교사를 보조로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역할 구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방과후를 원하는 정교사가 있는 경우 또는 담임 1명에 기간제 교사가 보조로 있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갈등이 커지지 않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병설유치원 교사 B)

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정교사 보결인 경우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에듀케어 교사가 보결인 경우는 유치원 운영비에서 대체교사 인건비를 조달하게 하고 있다. 대체교사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정교사가 그 수업공백을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순회교사제도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순회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해당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회교사제도는 순회교사가 교육청에 상주하면서 수업 보결이 있는 유치원에서 신청을 하면 수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순회교사는 수업지원만 하고 행정지원은 하지 않으며, 오전 수업 및 방과후과정 수업만 지원한다. 순회교사제도는 단기간의 수업결손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수업지원을 위해서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순회교사제도가 있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교육청에 순회교사가 상주하면서 유치원에서 신청을 하면 수업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순회교사 제도는 수업지원만 하고 행정지원은 없다. 순회교사는 오전 수업 및 방과후 과정만 지원하게 된다. (병설유치원 원감 A)

순회교사는 해당 교육청에 3-4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서는 수가 부족한 것 같지는 않다. 순회교사는 대체교사의 역할을 지원하고 있으며, 1주일 이상은 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기간을 해야 하는 경우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순회교사는 1주일 이내의 수업결손을 보충해야 할 때 지원하는 제도이다. 순회교사는 40대 중반의 꽤 경력이 있는 분이 하고 있다. (병설유치원 원감 A)

순회교사 제도는 2명이 1일 4시간 1곳만 가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수 순회교사는 유초중등 통틀어 1명만 있다. (병설유치원 교사 A)

2) 행정직원의 순회

순회교사제도가 있다면 행정직원의 순회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지만 행정직원 순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행정직원이 순회할 경우 유치원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행정직원 순회는 의문이다. 얼마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것인가가 의심스럽다. 행정직원에게도 우리 유치원, 우리 유아들이라는 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병설유치원 원감 A)

3) 대체교사 지원의 필요성

수업 결손이 발생할 때 대체교사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병가를 내기도 어렵고 학급 수가 적은 유치원일수록 다른 정교사의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다른 정교사가 수업결손을 지원할 경우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교사는 병가를 내고 싶어도 미리 예약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다. (병설유치원 교사 B)

유치원은 소수라서 불리한 경우가 있다. 수가 적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력지원도 유아 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대체 교사 지원은 정교사 사이에 보결로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정교사들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3학급은 가능하지만 1학급은 어렵다. 유아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인력이 적어서 더 어렵다. (병설유치원 교사 C)

4)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정교사 보결 대체교사 인건비는 지원되지만 방과후 과정 교사 보결 대체교사 인건비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방과후 과정 교사 보결 대체교사 인건비가 교육청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 운영비에서 대체교사 인건비를 조달해야 한다.

대체교사 지원은 해당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 대체인력은 유치원에서 알아서 구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대체인건비만 지원하고 있다. 공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비 또는 교육지원청 지원을 통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조달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A)

대체교사 지원비는 교육청 지원과 유치원 운영비에서 조달한다. 시간당 17000원으로 정교사 보결 대체교사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에듀케어 교사의 보

결수당은 1일 정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유치원 운영비에서 조달한다. 이런 경우 교육공무직원 수업결손을 보충하는 것이다. 대체인력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단설유치원 원장 B)

교육청에서는 시간당 17000원 6시간 기준으로 지원하는데 이 경우는 사람을 구할 수 있으나, 유치원 운영비로 시간당 10000원씩은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단설유치원 행정실장 A)

다. 급식실 지원

단설유치원 중에도 급식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 급식실이 있어도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조달해야 하는데 급식 이동을 할 때 운동장을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립유치원은 방학 때에도 방과후 과정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방학 중에 급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급식을 해야 한다.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방학 중에 조리원을 지원하여 유치원이 방학 중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원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방학 중 조리원 인건비를 조달해야 한다.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급식실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 음식의 크기나 매운 맛 등을 초등학교의 기준에 맞추게 되어 유치원 유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급식이 나올 수 있다. 그 외에도 유치원 간식의 경우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에서 영양사 없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단병설 유치원의 급식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 병설유치원 급식의 문제점

병설유치원은 독립적인 급식실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유아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받아야 한다. 초등학교 급식은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유아에게 너무 크게 조리된 음식이나 매운 맛 조절이 안 된 음식이 제공되기 쉽다.

급식실도 초등학교와 같이 쓰다 보니 유아를 위한 식단을 구성하기가 어렵다. 초등학교의 식단에 맞추다 보니 유아에게 너무 크게 잘라지거나 너무 매운 맛의 식단이 나오게 된다. (병설유치원 교사 B)

2) 간식 제공 문제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달리 급식 뿐 아니라 간식도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급식실을 이용하는 병설유치원은 급식실에서 간식을 제공받을 수 없다. 그래서 간식 식단의 경우 초등학교 영양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유치원 교사가 구성해야 한다.

간식 식단도 초등학교의 영양사가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교사가 구성하게 된다. (병설유치원 교사 C)

영양사는 초등학교만 신경 쓰고 간식을 신경 쓰지 않는다. 단설과 달리 병설에서는 급식 외의 간식은 교사가 다 해야 한다. (병설유치원 교사 B)

병설유치원에는 영양사와 조리원이 별도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급식을 제외한 간식의 경우에는 에듀케어 교사와 하모니가 담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간식 담당도 하모니가 담당한다. 병설유치원에는 영양사, 급식사가 별도로 없다. 주방에서 간식을 하모니가 담당한다. 전 부치기, 김밥 싸기, 국수 만들기 등을 하모니가 한다. 에듀케어 교사들이 간식 식단을 짜고 있다. (병설유치원 교육실 무사 B)

3세대 하모니는 간식, 청소 등을 담당한다. (병설유치원 원감 A)

3) 방학 중 급식

병설유치원에서는 초등학교 방학 때에도 방과후 과정이 진행된다. 그러나 방학 때에는 초등학교 급식실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유치원 조리실에서 급식을 하거나 도시락을 싸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유치원 조리실에서 방학 중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조리원을 방학 동안 별도로 채용해야 한다.

초등학교 방학 때에도 유치원 방과후 과정이 진행되지만 급식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원 조리실에서 방학 때만 급식을 한다. (병설유치원 교사 D)

50명 이상일 때는 급식을 정식으로 신고하게 되지만 초등학교 급식실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급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와야 한다. (병설유치원 교사 A)

에듀케어(종일제)를 방학 중에도 하는데 20-40명 급식을 해야 한다. 교육청 지원 조리원 1명이 와서 방학 중의 급식을 하게 된다. 타 시도는 방학 중 조리사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단설유치원 원장 B)

단설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차이는 단설유치원은 방학 중에도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어 영양사가 계속 근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양사는 단설유치원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 초등학교와 달리 방학이 없기 때문이다.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보다 규모가 작으나 방학이 없기 때문에 행정실장이 1년 근무하고 전출하는 경우가 많다. (병설유치원 교사 A)

유치원에서는 방학 중에도 방과후 과정에서 급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 급식실이 있어야 한다. (교육청 장학관 E)

4) 방학 중 조리원 채용

병설유치원에서 방학 중 방과후 과정을 위한 자체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방학 중에 조리원을 채용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방학 중 조리원 채용을 위한 인건비가 제공되지 않으면 유치원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조달하게 된다.

유치원은 연중무휴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한다. 그래서 방학 중 방과후 과정을 위한 자체급식을 해야 한다. 방학 중에는 초등학교 급식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방학 중에는 유치원에서 조리종사원을 채용해야 한다. 유치원 운영비에서 예산을 조달하여 방학 중 조리원을 채용한다. 방학 중 30-40일, 1일 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런 구인도 매우 어렵다. (병설유치원 부장교사 A)

누리과정 학비에서도 인건비, 급식비, 재료비 사용이 가능하다. 유아학비에서도 조리원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다. 매월 1인당 11만원 정부에서 지원한다. 매월 5만원이 세이브되는데 3개월이 지나면 300만원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걸 목적경비라서 반납하지 말라고 한다. 이 돈으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하다. (병설유치원 부장교사 A)

5) 단설유치원 급식의 문제점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과 달리 독립적인 급식실을 갖추고 있으나 모든 단설유치원이 급식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간 및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일부 단설유치원은 자체적인 급식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별도 급식실을 갖추고는 있으나 영양사나 조리원이 지원되지 않아 급식을 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단설유치원임에도 병설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급식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단설유치원도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조리원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이다. 급간식비는 단설유치원에서 따로 걷고 있다. (단설유치원 원장 A)

단설유치원의 경우 별도 급식실이 모든 단설유치원에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초등학교 부지 안에 하나의 건물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비공식적으로 병설형 단설이라고 불렀다. 이런 경우 별도 급식실이 없어서 초등학교 급식실을 같이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공간확보 및 예산문제에서 비롯되었다. (교육청 장학관 A)

예전에 만들어진 단설유치원 중에는 별도의 단설유치원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초등학교 부지 안에 단설유치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별도의 급식실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교육청 장학관 E)

단설유치원에도 급식실 및 조리실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적은 예산으로 초등학교 내 유희교실을 사용하여 설립하다 보니 급식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 단설유치원은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청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단설유치원에 급식실을 갖추 계획이 있다. (교육청 장학관 F)

급식실이 없는 단설유치원이 많다. 병설유치원을 확대하여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단설유치원이지만 병설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급식실을 사용해야 한다. 2013년 이후 설계된 단설유치원은 모두 급식실을 갖추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I)

단설유치원이 자체 급식실이 없거나 영양사와 조리원이 없어서 급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초등학교 급식실로부터 급식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급식 위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급식을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단설유치원까지 운동장을 가로질러 이동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교육청의 단설유치원 중 10곳은 급식실이 없다. 이 교육청의 단설 유치원은 반 가까이 급식실이 없는 것이다. 급식실이 있는데 영양사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초등학교 급식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급식이동이 쉽지 않다. 운동장을 통해서 유치원에 급식이 전달되는데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단설유치원 원장 B)

단설유치원에는 조리실이 있지만 실제로는 조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이동급식을 하게 된다. 2021년까지 단설유치원에 급식실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B)

라. 안전관리 인력 지원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보안관 및 배움터 지킴이가 지원된다. 일부 시·도에서는 학교보안관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배움터 지킴이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등하원 지도 등에서 초등학교보다 안전관리가 더 많이 필요함에도 학교보안관 및 배움터 지킴이가 별도로 지원되지 않는다. 물론 단병설 유치원 모두 초등학교의 학교 보안관 및 배움터 지킴이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등하원 지도 등을 위한 안전 인력이 지원될 필요는 있다고 할 수 있다.

1) 유치원 안전관리 인력 지원의 필요성

초등학교는 교문에 배움터 지킴이가 근무하게 되는데 유치원 원아들은 초등학생보다 어리기 때문에 교문뿐만 아니라 현관까지도 안전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단병설 유치원에는 별도의 안전인력이 지원되고 있지는 않다. 초등학교보다 유치원이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 많지만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지원은 더 부족한 것이다.

초등학교에는 배움터 지킴이가 있는데 유치원은 교문뿐만 아니라 현관까지 지킴이가 필요하다. (병설유치원 원감 A)

신규 방과후 교사 및 안전 보조인력이 필요하다. (병설유치원 교사 A)

아이가 실수를 할 때 다른 아이들 남겨놓고 처리하기 어렵다. 안전 및 기본생활에 대한 보조인력이 필요하다. (병설유치원 교사 A)

2) 유치원 귀가지도

유치원 귀가지도 등을 할 때 부모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인력이 필요한데 안전관리 인력이 지원되지 않으면 교사들이 담당하게 된다. 연수 등 출장을 가는 등 교사가 자리를 비우게 될 때는 특히 지킴이 등 안전관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교사 참석이 요구되는 연수 등 출장을 갈 때 지킴이가 필요하다. (병설유치원 교사 B)

귀가지도 문제 등에 있어서 지킴이가 필요하다. 방과후 7시간보다 1시간 먼저 가는 유아가 있을 때 부모에게 인계하는 귀가지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때 지킴이가 필요하다. (병설유치원 교사 C)

3) 학교보안관과 배움터 지킴이

초등학교에 배치되는 학교보안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배움터 지킴이는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관리인력은 유치원에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등하원 지도 등의 안전관리 업무는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로 돌아가게 된다.

학교보안관은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초등학교에는 2명이 배치된다. 보안관은 시청에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학교장이 채용한다. 배움터 지킴이는 1일 4시간 월 80만원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지원된다. 배움터 지킴이는 자원봉사 개념이다. (단설유치원 원장 B)

배움터 지킴이는 공립유치원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등하원 지도도 해주지 않는다. 등하원 지도는 교사들이 현관에서 다하게 된다. 현장학습 문 개방 업무도 해주지 않는다. (단설유치원 원장 B)

4) 유치원 부지와 안전관리

유치원의 안전관리 인력 지원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단병설 유치원 모두 학교의 좋은 부지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도 있다. 유치원 현관문을 나오자마자 대로인 경우 등이 그러한 경우인데 이런 면에서 공립유치원은 안전한 부지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등하원 지도 등을 위한 안전관리 인력 지원이 요구된다.

공립유치원은 단병설 모두 학교의 좋은 부지를 제공받지 못한다. 그래서 위험한 곳에 위치한 유치원이 많다. 예를 들어 유치원 현관문을 나오자마자 대로인 경우 등이다. 유치원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안전한 부지가 제공되어야 하고, 등하원 지원을 위한 안전인력이 필요하다. (단설유치원 원장 B)

5) 학급 수와 안전관리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보다 학급 수가 많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안전관리 인력 지원이 특히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단설유치원은 학급 수가 많기 때문에 병설유치원보다 안전관리가 어렵다. (단설유치원 원장 B)

병설유치원의 장점은 관리측면에서 1층에 다 있어서 병설이 나은 점이 있다. 단 설은 안전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병설유치원 교사 A)

마. 기간제 인력 무기계약직 전환

교무행정지원사, 방과후 과정 교사, 교육실무사와 같은 기간제 인력은 시·도 교육청마다 차이는 있으나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시·도 교육청이 계약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는 그 지위에 관여할 수 없다. 비정규직 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직무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교육청이 계약 당사자이고 유치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유치원이 원하지 않은 인력이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들어와도 유치원은 관여할 수 없고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교육청은 해당자에 대해 잘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기간제 인력 배치에 대해 교육청과 유치원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 기간제와 정규직

방과후 과정 교사를 비롯해서 기간제 인력이 공립에서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유치원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이 업무를 하기를 원하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정규직이 기간제보다 유치원 업무에 대한 주인의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가 방과후 과정 업무를 담당한다. 8시간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이 업무를 해야 한다. (병설유치원 원감 A)

교사 사명감은 주인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 교사가 필요하다. (병설유치원 원감 A)

2) 교육공무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도 교육청마다 차이는 있지만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근무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교육감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서 유치원은 계약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원을 유치원으로 발령하게 된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고용안정성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유치원에서 그 직원의 고용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원과 업무시스템 상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비정규직 근무를 하고 1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계약당사자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다. 청소용역은 비정규직(파견직)인데 200만 원 이상 인건비를 유치원 운영비에서 조달하고 있다. (단설유치원 원장 A)

이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 채용 후 3개월 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2015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공무직원(비정규직)을 채용한다(교육감 직고용제).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원(비정규직)을 유치원으로 발령하는데 유치원과 업무시스템 상 큰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 원장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단설유치원 원장 B)

교육공무직의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부 시·도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반면 시·도 교육청에 따라서는 교육공무직을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도 한다.

교육공무직이 채용된 후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교육장이 당사자가 된다. (교육청 장학관 B)

교무행정사, 조리사, 조리원과 같은 교육공무직은 채용된 후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무기계약직은 교육장이 임용한다. (교육청 장학관 D)

교육공무직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교육청에서 선발한다. (교육청 장학관 E)

교육공무직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채용 후 1년이 지나면 전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전환 심사대상이 된다. (교육청 장학관 F)

교육공무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있어서는 시험 형식을 거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G)

교육공무직을 채용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

라 채용할 때부터 교육감 직고용제를 통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교육청 장학사 K)

3) 교육공무직의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이 유치원 소속이 아니라 교육청 소속이면 고용안정성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업무분장을 둘러싸고 교육공무직원과 교사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성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교육공무직이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다.

행정지원사와 교육실무사는 교육청 소속인데 학교장 지시에 따른다는 계약서를 쓴다. 지금은 모두 교육청 소속으로 무기계약직이다. 학교 소속이면 더 힘들 것 이라고 생각된다. 학교 소속이면 부당한 지시에 반발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지금은 노조를 통해서 교육청에 말을 한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정규직보다 교육공무직이 행정지원을 많이 담당한다. 교육공무직은 교육청에서 선발한다. 교육공무직은 5분도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경기도가 이런 경향이 특히 심하다. (병설유치원 부장교사 A)

교육공무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유치원에서 그 신분에 대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들어와도 유치원에서 조치를 할 수 없고 교육청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그 직원에 대해 알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에 대해서 교육청과 유치원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교육공무직은 비정규직으로 학교에 채용되어 1,2년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나 지금 서울에서는 채용 후 3개월 이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학교장은 웬만하면 안 내보내려고 한다.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교육청으로 가면 어떻게 할 수 없다. 민원이 학부모로부터 와도 교육청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조치하기가 어렵다. (병설유치원 부장교사 A)

정교사는 교육공무직과의 관계가 더 어렵다고 한다. 유치원은 네 것 내 것 따지고 칼 같이 구분하기가 어렵다. (병설유치원 부장교사 A)

교무행정원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학교장이 채용하는 경우에 비하면 유치원에서 불편한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교육청 장학관 H)

교육공무직을 채용할 때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교육감 직고용제). 학교장이 채용할 때와 비교하면 유치원 관계자들이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다. 유치원 교사의 의견을 틀을 통로를 따로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으나 유치원 내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I)

교육공무직이 기간제로 채용되면 1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유치원과 교육청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최소한의 지침 및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채용관리를 어떻게 할지를 유치원에 안내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L)

바. 교육 관련법 유치원 포함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초중등학교를 규율하는 교육 관련 개별법들에서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유치원이 적절한 행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는 유치원이 학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도 시·도 교육청의 급식 관련 부서에서 유치원 관련 업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보건법에는 유치원이 학교에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에 보건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학교용지특별법에도 유치원이 학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치원 부지를 비싸게 구입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초중등학교가 들어간 교육 관련법에는 유치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학교급식법과 유치원

초중등학교는 규정되어 있으나 유치원이 학교에 포함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는 학교급식법이다.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대상)는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한다. 학교급식법에서 정의하는 학교는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이렇게 학교 급식법에는 초중등학교는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은 제외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도 어느 부서 소관인가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학교급식법에도 유치원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단설도 급식 관련 인력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 급식비 지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 유치원 급식의 경우 시·교육청에서 급식과 / 예산지원과 / 유아교육과가 맞물리는 정책인데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이 들어가 있지 않다보니 어느 부서 소관인가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한다. (단설유치원 원장 A)

학교급식법에서 유치원이 빠져서 식중독 사고가 나도 급식 관련 부서에서 유치원 관련 일을 안 한다고 한다. 업무조정협의회에서 2005년부터 싸웠는데 결론은 항상 급식팀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설유치원 원장 B)

학교급식법에서 유치원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방학 중 급식이 중단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치원 별로 식사를 별도로 준비하거나 위탁급식을 해야 한다. 장학사 1명당 150개 유치원을 지도점검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교육청 장학관 J)

학교급식법에서 유치원이 제외되어 있으나 급식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 급식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급식법에서 유치원이 제외되어 있으나 유치원 급식 관련 업무는 현재 교육청 급식계에서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 이전에는 초중등학교와 통합해서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유아교육법 시행 이후에는 학교급식법에서 유치원이 제외되어 있는 관계로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많았다. 급식 관련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식계에서 수행해야 한다. (교육청 장학관 B)

학교급식법에서 유치원이 제외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현재는 학교급식 담당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방과후 과정 종일반만 별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방과후 과정 급식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은 초등돌봄 교실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청 장학관 C)

학교급식법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교육청 급식파트에서 관련 업무를 모두 하고 있다. 이제는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 모두 급식파트에서 유치원 급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E)

공사립 유치원을 구분하여 공립유치원은 교육청 급식 담당 부서에서 감독하나 사립유치원은 시군구청에서 감독하기도 한다.

학교급식법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는 교육청 급식파트에서 관련 업무를 모두 하고 있다. 이제는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 모두 급식파트에서 유치원 급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E)

학교급식법에서 유치원이 제외되어 있어서 대단히 불편하다. 급식 관련 업무를 공립유치원은 교육청 급식팀과 유아교육과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과에서 모두 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D)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립유치원은 교육청 급식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시군구청에서 감독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H)

급식의 경우 학교급식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에서 규제한다. 그래서 구청에서 유치원 급식을 감독한다. (단설유치원 원장 B)

2) 학교보건법과 유치원

학교보건법에서는 제2조(정의) 제2호에서 학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처럼 학교보건법에는 유치원이 학교에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에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유치원이 학교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조치를 실행할 인력이 학교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학교보건법에는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관련 부서에서 유치원 관련 일을 안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가 있다. 보건직, 급식직이 일반 행정직 직렬이 아니다 보니 전문가가 승진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단설유치원 원장 B)

3) 학교용지특례법과 유치원

학교용지특례법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이처럼 학교용지특례법에도 초중등학교는 학교에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은 학교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초중등학교에 비해 유치원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비싸게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용지특례법에서 유치원이 빠져 있어 유치원은 땅을 비싸게 사야 한다. 초중등학교가 있는 법에는 유치원이 모두 들어가야 한다. (단설유치원 원장 B)

4) 교육 관련법과 유치원

유아교육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개별법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나 초중등학교가 들어가 있는 법에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초중등학교가 들어가 있는 법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유치원이 배제됨으로써 초중등학교가 받게 되는 지원을 유치원이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중등학교가 들어가는 교육관련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유치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법 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 관련법에 유아가 빠져 있는데 초중등학교가 들어가는 모든 법에는 반드시 유아가 들어가야 한다. (단설유치원 원장 A)

경기도에서는 전기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세를 인하해도 관련 법령에 유치원이 학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연간 400만원 전기료를 그대로 내고 있다. 유치원이 학교에 포함되어 있으면 전기세 인가로 인해 연간 120만원만 내면 된다. (단설유치원 원장 A)

유아교육법이 제정될 때에는 개별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개별법에서 유치원이 제외되면서 행정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청 장학관 A)

유아교육법이 제정될 때에는 법이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허술한 점이 많이 있

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관련된 각종 법에 유아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법을 예로 들자면 공무원 업무 시 학교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를 먼저 보게 되는데 유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치원은 지원에서 배제되게 된다. (교육청 장학관 A)

교육관련법에 유치원이 제외된 것이 매우 큰 애로사항이다. (교육청 장학관 J)

교육 관련법에서 유아가 빠져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많다. (단설유치원 원장 B)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법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유초중등 연계를 위해서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유초중등 교육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 장학관 E)

유아교육법 안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유치원 관련 업무에도 초중등교육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교육법 안에 유치원이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포괄할 수 있는 부칙이 필요하다. (교육청 장학관 F)

5) 유치원 명칭의 유아학교 변경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면 학교 관련법에 유치원을 포함시키기 용이하다는 것과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단설유치원 원장 A)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단설유치원 원장 B)

사. 시설 이용

1) 병설유치원의 초등학교 시설 이용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시설은 초등학생이 먼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는 시간에만 유치원이 사용할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다.

시설이용은 초등학교 위주이고 비는 시간에만 유치원이 사용할 수 있다. 1학년 유치원은 교실만 사용할 수 있다. (병설유치원 교사 A)

시설에 있어서는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세 들어 사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병설유치원 교사 B)

병설유치원만의 장점은 초등학교와 함께 하는 활동이 가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유치원을 잘 안 끼워준다. 예를 들어 연주회 참석이나 학부모 교육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초등시설을 같이 사용한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전통놀이 한마당 등을 할 때 초등학교 강당을 사용할 수 있다. (병설유치원 원감 A)

2) 바깥놀이 시간

유치원 교육과정 중 1시간의 바깥놀이 시간을 할 때 미세먼지 등으로 외부에 나가기 어려울 경우 단설유치원은 자체 특별실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병설유치원은 그러한 공간이 없어 강당 등의 초등학교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시설은 이미 초등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설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교육과정 중 1시간은 바깥놀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단설은 특별실이 넉넉하지만 병설은 그러한 공간이 없다. 초등학교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절차가 필요하다. (병설유치원 교사 C)

병설유치원 단점은 미세먼지 많을 때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야외활동 1시간을 해야 하는데 미세먼지가 많을 때 단설은 여러 가지 놀이방이 안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으나 병설은 초등학교 강당을 이미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병설유치원 원감 A)

3) 초등학교 시설의 지원

초등학교의 도서관과 보건실 등도 유치원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과 별개의 기관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의 도서관, 보건실, 사서실은 유치원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유치원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다. (병설유치원 교사 A)

4) 단설유치원의 놀이터 문제

단설유치원들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놀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보다 학급 수가 많기 때문에 놀이터 사용에 있어서도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 놀이터는 바깥놀이터가 풍족하지만 많은 단설유치원들이 사실상 놀이터가 없다. 놀이터가 없으면 인가가 안 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이름만 놀이터가 많다. 너무 잘못된 부지로 인해 놀이터가 없는 것이다. (단설유치원 원장 B)

많은 유치원들이 바깥놀이 1시간이 어렵다. 그래서 강당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동네 놀이터를 전전하곤 한다. 이런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한다. 단설유치원은 일반적으로 7학급인데 놀이터가 부족하다. (단설유치원 원장 B)

병설이 공간은 부족하지만 인원이 적어서 놀이터 이용이 쉽다. 단설은 놀이터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병설유치원 교사 A)

아. 시설 주무관

1) 시설주무관의 업무

시설주무관은 교육공무원으로 시설 및 환경관리를 하는 인력이다. 시설주무관은 교육공무원으로 배치되지만 TO를 넘은 경우 용역업체를 통해 시설주무관 업무를 하는 인력을 채용하기도 한다.

주무관은 시설 파손 수리, 텃밭, 환경관리 등을 담당한다. 다른 학교의 경우는 주무관이 자기 일 아니라고 선을 긋는 경우가 많다. 행정실 주무관은 3명인데 모두 교육공무원이다. (병설유치원 교사 A)

주무관을 유치원에서 빼면 안 된다. 유치원은 남자가 없기 때문이다. (병설유치원 원감 A)

2) 시설주무관의 채용

시설주무관 TO를 넘게 되는 경우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유치원에서 직접 고용하거나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하게 된다. 이런 경우 자격요건 관리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주무관은 용역업체에서 보내는데 교육청을 거치지 않는다. 용역은 비정규직이므로 행정실장이 바꿀 수 있다. 자격요건은 용역업체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한다. 문제발생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병설유치원 원감 A)

주무관 TO가 없는 경우 용역업체를 쓰기도 한다. (단설유치원 원장 A)

시설주무관 1명이 남자인데, 시설관리를 혼자서하기가 어렵다. 주무관 TO 넘는 경우 유치원에서 직고용하거나 용역업체를 사용한다. 주무관 채용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단설유치원 원장 B)

교육감 고용 직종은 25개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외는 유치원에서 고용한다. 주무관 정원이 있지만 교육청에서 사람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 유치원에서 고용한다. (단설유치원 원장 B)

(3) 시설주무관의 필요성

시설관리 업무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치원에서는 시설주무관은 반드시 지원되어야 하는 인력으로 보고 있었다.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여러 개 학교를 1명의 시설주무관이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시설주무관의 수를 줄이는 것은 유치원의 시설관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유치원 교사들도 시설관리 업무를 중요한 행정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단설 행정직원은 행정실장 1명, 시설주무관 2명이 최소한 있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단설 TO는 일반직 2명이다. 시설주무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단설유치원 원장 A)

교육청에서 학교를 여러 개 묶어서 시설주무관 1명이 담당하는 것을 추진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단설유치원 원장 A)

자. 비정규직 인력 배치

1)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수요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행정지원 인력은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 인력을 늘리는 것에는 제약이 있다. 비정규직 인력을 늘리는 것은 시·도 교육청에서도 제한하고 있고 인건비 지원에도 제약이 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에서 비정규직을 늘리지 않으면 그 행정업무 부담은 교사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을 쓰지 말라고 하니 인건비 지원이 없으면 인력을 쓸 수 없다. (단설유치원 원장 A)

간호사, 시설주무관, 행정지원사, 전산직 등 비정규직이 많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늘릴 수 없는데 유치원에서 필요한 인력은 비정규직인 문제가 있다. (단설유치원 원장 B)

교육감은 인력을 계속 늘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업무분장 배분의 문제는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한다.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비하면 무엇이든 열외이다. (단설유치원 원장 B)

유치원에는 정원 외 기간제의 수가 많다. 초등학교는 1,2년을 휴직해도 정원을 주지만 유치원은 6개월을 휴직해도 정원을 주지 않는다. (단설유치원 원장 B)

2) 방학 중 급여 문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교무행정지원사는 방학 중에 급여가 나오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유치원은 방학 중에도 방과후 과정 등으로 인해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방학 중에 급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방학 중에 급여가 나왔으면 좋겠다. 교무 행정 실무사는 연 209일을 근무하는데 방학 중 근무를 못하면 알바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3) 최저임금과 근무시간

비정규직의 근무조건에 있어서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교육청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있다.

주 5일 1개월 209시간을 근무하는데 243시간은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넘기기 때문에 최저임금인 180여만 원에 맞추기 위해 209시간으로 줄였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4)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에듀케어 교사의 경우 아이와 직접 접촉을 하고 수업과 돌봄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간제 교사이지만 정교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

이 유치원에서는 교육 공무원보다 에듀케어 교사가 더 어려웠다. 왜냐하면 아이와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이다. 에듀케어 교사는 방과후 과정 교사로 기간제 교사인데 정교사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 에듀케어 교사는 방과후 과정 교사로 선발되어 종일반 아이들을 봐주는 교사이다. 정교사와 직종이 다르지만 수업을 하는 교사이다. 처음에는 유치원에서 직접 선발을 하였으나 교육청에서 보내면 유치원에서 내보낼 수가 없다. 에듀케어 교사는 정교사와 동일한 대우를 요구한다. 모든 직종에는 급이 있는데 그게 싫으면 임용시험을 봐야 한다. (병설유치원 부장교사 A)

4.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향

국공립 유치원 관계자들을 면담한 결과 단병설 유치원 관계자 모두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장기적으로 단설유치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종속되어 있고 독립된 행정실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물론 인력, 예산, 부지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병설유치원 위주로 가게 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단설유치원 확대로 가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단설유치원 시스템의 필요성

병설유치원에 오랫동안 근무하였던 교사 입장에서는 독립적인 행정실, 영양사, 간호사, 주무관을 갖춘 단설유치원이 시스템적으로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단설유치원 근무는 매우 행복하다 단설유치원 확대가 바람직하다. 우리만의 행정실, 영양사, 간호사가 있어서 너무 좋다. 우리만의 주무관은 매우 감사하다. (병설유치원 원감 A)

병설에 있다가 단설에 오니 매우 행복하다. 단설 시스템이 훨씬 좋다. 단설이 되어서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단설에 와서 근무해보니 유치원 교사가 된 후 느낀 서러움이 사라졌다. 시스템 상으로는 매우 행복하다. 시스템

자체는 단설처럼 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단설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병설유치원 원감 A)

초등학교 교장의 입장에서는 병설유치원을 확대할 경우 안전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가중되어 병설유치원 확대에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병설은 확대 안하고 단설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교장들이 병설을 확대하는 것을 싫어한다. 병설유치원이 늘어나면 초등학교 교장 입장에서 아이들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병설유치원 원감 A)

2) 단설유치원의 독립된 행정시스템

유아학비 업무와 같은 행정업무 처리를 단설유치원은 독립적인 행정실에서 한다는 점에서 병설유치원보다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단병설 차이는 학비시스템 관리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병설은 모든 관련 업무를 교사가 해야 하지만 단설은 행정실에서 관련 업무를 해준다. (병설유치원 교사 A)

정책방향은 단설 확대로 가야 한다. 병설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교육청 장학관 A)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교무행정지원사의 시각에서도 병설유치원이 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단설유치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병설에 올 때 시험을 봐서 행정지원사가 되었는데 병설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설이 낫다고 생각된다. (병설유치원 교무행정지원사 A)

IV. 결론 및 정책제언

1. 병설유치원 행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

가. 전담원감 배치

병설유치원에서는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학급 이상의 규모인 경우 그 중 일부의 유치원에 전담원감이 배치되고 있다. 전담원감이 없을 경우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이 병설유치원의 원장 및 원감을 겸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겸임원장 및 원감은 유아교육 전공자가 아니고 유아교육에 근무한 경력도 없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관리자가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유아교육의 특성에 맞는 행정지원을 하기도 어려움이 따르며 교사에게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전담원감이 없는 유치원의 경우 부장교사가 사실상의 원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장교사는 학급담임도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업무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에서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의 경우 전담원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1-2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에까지 전담원감을 배치하는 것은 인력의 한계상 어렵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에는 모두 전담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교무행정지원사 배치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무행정지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하고 있다. 교무행정지원사는 비정규직으로 교육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교무행정지원사는 유아학비 처리 및 정보 공시 등의 유치원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경감시켜준다는 점에서 교무행정지원사에 대한 일선 유치원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교사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할 경우 오전 수업시간에는 행정업무가 처리되기 어려우나 교무행정지원사가 행정업무를 처리할 경우 오전 수업시간에도 행정업무가 처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교무행정지원사는 초등학교 행정실의 일반직 행정직원과 달리

비정규직이므로 상대적으로 배치가 용이하다.

교무행정지원사의 배치 기준은 시·도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다. 전담원감이 없는 병설유치원에만 배치하는 경우, 단설유치원에만 배치하는 경우, 단설유치원과 일정 학급 수 이상의 병설유치원에 배치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전담원감이 없는 병설유치원에만 배치하는 경우는 전담원감이 오면 해당 교무행정지원사를 다른 유치원으로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전담원감이 하는 업무는 관리에 중점을 두게 되고, 교무행정지원사의 업무는 일반 행정업무 처리에 중점을 두는 점에서 인력 및 예산이 허용하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전담원감이 있는 유치원에도 교무행정지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 분리

병설유치원 관계자들 중에서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을 별도로 분리하여 그 행정직원이 유치원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초등학교 행정직원들은 병설유치원 업무를 부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유치원 교직원들이 초등학교 행정실에 행정업무 지원을 요청하기가 어렵고 유치원 교사들에게 행정업무 부담이 돌아간다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을 분리한다면 유치원 교직원들이 행정실에 행정업무를 요청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을 분리할 경우 업무분장 배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치원 행정업무가 해당 직원 1명에게 쏠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특정 직원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 전담 행정직원을 분리하는 방안은 업무분장 배분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 행정직 겸임수당

초등학교 교장 및 교감이 병설유치원 원장 및 원감을 겸임할 경우 겸임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초등학교 행정실장을 비롯한 행정직원들에게는 이러한 겸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최근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초등학교 행정직원의 유치원 업무 겸임 근거규정이 만들어 졌으나 아직 수당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행정직원들에 대한 겸임수당은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들이 병설유치원 행정지원 업무를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실 직원들에 대해 겸임수당을 지급한다면 행정실 직원들이 유치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정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실 직원들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한다면 행정실장 뿐 아니라 실제로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도 겸임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마. 공문 공람

행정지원과 관련하여 병설유치원 교직원들이 느끼는 불편 중 하나는 초등학교에 오는 공문이 병설유치원에 공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문이 공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 교직원의 입장에서는 모든 공문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고 기안 제출 기한이 임박하여 공문을 발견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유치원에 공문을 공람하게 하고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공문이 아니라면 유치원도 같이 수신처로 잡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업무분장 개선

교무행정지원사들은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면서 업무분장을 둘러싼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업무의 한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자신의 업무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유치원 교사가 교무행정지원사에게 요구하는 업무가 업무분장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방과후 과정 교사와는 같은 교육 공무직 사이인데도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업무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무행정지원사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단설유치원 행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

가. 보건인력 지원

단설유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인력은 간호사로 나타났다. 단설유치원 원장들은 단설유치원에 가장 시급하게 배치되어야 하는 인력은 간호사라고 보고 있었다. 보건인력에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건교사도 있으나 보건교사를 단설유치원에 배치하는 유아교육법상 근거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법상 규정을 통해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단설유치원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유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단설유치원 배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초등학교 수준 행정지원 인력 배치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과 달리 독립된 행정실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병설유치원보다는 훨씬 향상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행정실 직원의 수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단설유치원은 7학급 이상인 경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도 교육청마다 차이는 있으나 행정실에 배치되는 행정직원의 수는 2-3명 정도이다. 이러한 행정직원 배치는 비슷한 규모의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의 수가 3-4명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인력과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장기적으로 단설유치원 행정지원 인력의 배치를 비슷한 학급수를 가진 초등학교 수준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행정실 직원을 늘리기 어렵다면 교무행정지원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현장학습 지원인력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에 비해 학급 수가 많기 때문에 현장학습을 나갈 때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아이들을 인솔할 인력이 부족해서 외부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이들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현장학습 등 유치원 외부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학부모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현장학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3. 단병설 유치원 공통 행정지원 체계 개선 방안

가. 교사 추가 배치

공립유치원 관계자들 중에는 유치원에 행정지원 인력보다 교사를 더 많이 배치해주시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이유로는 교사가 더 배치될 경우 행정지원과 수업지원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치원 교사는 수업 뿐 아니라 행정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원보다 교사를 더 배치할 경우 행정지원과 수업지원이 모두 가능하므로 교사가 보결일 경우 등에 대체교사를 구할 필요가 없이 다른 교사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는 부담임제 등을 통해 1학급에 교사가 2명씩 배치될 수 있으나 공립유치원에는 이러한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공립유치원에 정교사를 더 배치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정원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담임 1명에 기간제 교사를 보조로 두거나,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고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정교사 보결인 경우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에듀케어 교사가 보결인 경우는 유치원 운영비에서 대체교사 인건비를 조달하게 하고 있다. 대체교사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정교사가 그 수업공백을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급식실 지원

단설유치원 중에도 급식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 급식실이 있어도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조달해야 하는데 급식 이동을 할 때 운동장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립유치원은 방학 때에도 방과후 과정을 하기 때문에 초

등학교에서 방학 중에 급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급식을 해야 한다.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방학 중에 조리원을 지원하여 유치원이 방학 중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원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방학 중 조리원 인건비를 조달해야 한다.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급식실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 음식의 크기나 매운 맛 등을 초등학교생의 기준에 맞추게 되어 유치원 유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급식이 나올 수 있다. 그 외에도 유치원 간식의 경우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에서 영양사 없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단병설 유치원의 급식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라. 안전관리 인력 지원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보안관 및 배움터 지킴이가 지원된다. 일부 시·도에서는 학교보안관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배움터 지킴이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등하원 지도 등에서 초등학교보다 안전관리가 더 많이 필요함에도 학교보안관 및 배움터 지킴이가 별도로 지원되지 않는다. 물론 단병설 유치원 모두 초등학교의 학교 보안관 및 배움터 지킴이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등하원 지도 등을 위한 안전 인력이 지원될 필요는 있다고 할 수 있다.

마. 기간제 인력 무기계약직 전환

교무행정지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직원은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시·도 교육청에 따라서는 채용될 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기도 한다. 무기계약직이 되면 시·도 교육청이 계약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는 그 지위에 관여할 수 없다. 비정규직 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직무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교육청이 계약 당사자이고 유치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유치원이 원하지 않은 인력이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들어와도 유치원은 관여할 수 없고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교육청은 해당자에 대해 잘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기간제 인력 배치에 대해 교육청과 유치원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

스텝 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바. 교육 관련법 유치원 포함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초중등학교를 규율하는 교육 관련 개별법들에서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유치원이 적절한 행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는 유치원이 학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도 시·도 교육청의 급식 관련 부서에서 유치원 관련 업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보건법에는 유치원이 학교에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에 보건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학교용지특별법에도 유치원이 학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치원 부지를 비싸게 구입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초중등학교가 들어간 교육 관련법에는 유치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향

국공립 유치원 관계자들을 면담한 결과 단병설 유치원 관계자 모두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장기적으로 단설유치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종속되어 있고 독립된 행정실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물론 인력, 예산, 부지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병설유치원 위주로 가게 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단설유치원 확대를 가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정철·장연주(2010). 병설유치원 교사의 방학 중 종일제 운영의 어려움. 유아교육학논집, 14(4), 209-235.
- 김안나(2012).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장이 바라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쟁점과 과제에 관한 담론.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5), 203-229.
- 김은영·도남희·조은경·조혜주(2011). 육아지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인력운영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조혜주(2013).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력 배치 및 운영에 대한 교원의 인식 및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4), 361-386.
- 문지희(2016). 제주지역의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한국유아교육연구, 18(1), 111-133.
- 박은정·이인희·김승희(2017). 제주 공립 병설유치원 교사의 수업 외 행정업무 지원 우선순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6), 423-448.
- 신주은·이대균(2014). 공립유치원 저경력 교사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1), 23-56.
- 이유진·김현주(2010). 단일학급 병설유치원 교사의 직무수행 어려움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28(2), 13-33.
- 최윤미·이대균(2015). 개원 공립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의 교직생활의 어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 유아교육학논집, 19(3), 5-28.
- 최은영·황성온·황우상(2012). 공립유치원 설치·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웹사이트 및 법령]

파이낸셜 뉴스(2017. 06. 13일자). (검색일: 2017. 11.26).

<http://www.fnnews.com/news/201706131758371797>

한국교육신문(2017. 10. 12일자). (검색일: 2017. 11. 28).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2927>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08.04., 타법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7.9.1.] [대통령령 제26856호, 2017.09.0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19.] [서울특별시조례 제6358호, 2016.12.29., 타법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2.18.]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68호, 2017.12.18., 타법개정]

「유아교육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32호, 2017.12.19.,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6.22.] [대통령령 제28111호, 2017.06.22., 일부개정]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타법개정]

「학교보건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32호, 2017.1.17., 타법개정]

부록

시·도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 공무원 정원 배치 기준

부록. 시·도 교육청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 기준

<부표1> 서울특별시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

1. 단설유치원 <부표1-1>

직무	학급수	전체
	직렬	
행정	교육행정	7급 1, 행정 8급 이하사무운영 1
시설관리	시설관리	8급 이하 1
총정원	3	

2. 병설유치원 설치 초등학교 <부표1-2>

직무	학급수	25 이하	26~42	43~48	49 이상
	직렬				
행정	교육행정· 사무운영	행정7급 1 행정8급 이하 사무운영 2	행정6급 1 행정7급 이하 사무운영 2	행정6급 1 행정7급 이하사무운영 3	
		3	3	4	
시설관 리	시설관리	8급 이하 2	7급 이하 2		7급 이하 3
총정원		5	5	6	7

※ 병설유치원 학급수는 2배로 산정하여 초등학교 학급수에 가산

※ 행정실장 외의 직렬별 정원은 총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비고]

- 가. 자격증소지자 비의무배치대상기관의 전기운영직 및 열관리운영직 정원은 당해 현원의 자연감소 시 의무배치기관으로 조정 배치하거나 감축
- 나. 자격증소지자의 선임을 위한 전기운영직 및 열관리운영직 정원 배정

은 가급적 지양하고 유자격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거나 시설관리
 용역업체에 의한 관리 권장

- 다. 운전직 결원 발생 시 가급적 당해 정원을 감축하며 필요시 임차차량 활용
- 라. 공업계학교 실습조교 시설관리직 결원 발생 시 가급적 당해 정원을 감축하고 학교회계직(실습보조) 채용 권장
- 마. 특수학교 급식보조 시설관리직 결원 발생 시 가급적 당해 정원을 감축하고 학교회계직(조리원) 채용 권장

[행정사항]

- 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은 정원관리 형편과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나. 교육지원청은 동 기준을 참고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정원배정기준을 수립·운영

<부표2> 부산광역시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치기준

1. 단설유치원 <부표2-1>

구 분	전체 단설 유치원	계
교육행정	7급 1명, 8급 1명	2명

2. 초등학교 <부표2-2>

구 분	9학급 이하	10~16학급	17~37학급	38학급 이상
교육행정	7급 1명	7급 1명	6급 1명	6급 1명
	8급 1명	8급 2명	7~8급 1~2명	7~8급 1~3명
시설관리	1명	1명	1~2명	1~2명
계	3명	4명	4명	5명

※ 증치 : 원아수 70명이상이고 4학급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행정실에 행정 또는 사무운영 1명 증치(이 경우 병설유치원 학급수는 초등학교 최종 학급수에서 제외)

<정원배치 공통사항>

-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치 기준은 정원관리의 형편과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학급수 산정 시 병설유치원, 특수학급은 최종 학급수에 포함
- 교육행정 7급 이하와 사무운영은 상호대체 배치 가능 (단, 행정실장 제외)
- 시설관리와 건축운영, 기계운영은 통합 운영
- 증치기준
 - 수영장, 기숙사, 특수시설, 운동부, 1일 3식 급식학교 운영에 따른 관련 직렬 배정
 - 통학버스운영 및 공동급식 학교 운전원 배정
 - 학교의 목적 및 성격, 시설규모, 노후도 등을 감안한 필요인력 배정
 - 신설학교에는 다음연도까지의 학급수를 기준으로 필요인력 배정
- 당직 전담 방호원, 급식학교 위생원은 단계적으로 감축
- 교육행정과 시설관리는 총 배치 정원 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

<부표3> 대구광역시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치기준

1. 단설유치원 <부표3-1>

구 분	전체 단설 유치원	계
교육행정	7급 1명, 8급 1명	2명

2. 초등학교 <부표3-2>

구 분	25학급 이하	26~33학급	34~40학급	41학급 이상
교육행정	7급 1명 8급 1명	6급 1명 7~8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조리	8급 1명	8급 1명	7~8급 1명	6~7급 1명
시설관리	8급 1명	8급 1명	7~8급 1명	7~8급 1명
계	4명	5명	5명	5명

○ 시설관리·조리직렬 정원 미배치교는 인건비 별도 지원

<정원배치 공통사항>

-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은 정원관리 형편과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할 수 있음
 - 학급 수 급간의 경계가 되는 경우 기준 학급 수의 3학급 범위 내에서 1 계급 상향 또는 하향조정 할 수 있음
- 학급수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수 포함
- 사무운영은 교육행정과 통합하여 운영
- 신설학교 정원 배치 기준
 - 초등학교 : 원활한 개교 업무를 위한 개교 후 1년간 8급 1명을 추가 배정
 - 단설유치원, 중·고 : 완성학급 수 기준으로 정원 배치

<부표4> 인천광역시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치기준

1. 단설유치원 <부표4-1>

정원배치기준					
학급수	계	교육행정(명)			시설 관리
		6급	7급	8급	
전체 학급	3		1	1	1

※ 급식 유치원 조리직렬 정원범위 내 증치

2. 초등학교 <부표4-2>

정원배치기준						
학급수	계	교육행정				시설 관리
		5급	6급	7급	8급	
분교장	1					1
17학급 이하	3			1	1	1
18~50학급	4		1	1	1	1
51~60학급	5		1	1	2	1
61학급 이상	5	1	1	1	1	1

※ 병설유치원 학급수에 대한 가중치 적용: 원당 1학급은 3학급으로, 2학급부터 1.5학급으로 가산(소수점 이하 버림)

<정원 배치 공통사항>

- 각급기관 지방공무원 정원배치기준은 정원관리 형편과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교육행정 7급 이하와 기타직렬은 상호대체 배치 가능(단, 학교 행정실장 제외)
- 운전·조리·기계·열관리·전기·통신직렬은 자연감소인력 만큼 감축
- BTL교는 학급수와 관계없이 시설관리(기타직렬) 1명 배정
- 학급수는 분교 학급수, 특수학급수, 병설유치원 학급수를 포함
- 증치 기준
 - 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운전직렬 증치
 - 분교 및 舊 학생체육관 등 특수시설(기숙사) 운영에 따른 기타직렬 증치

- 1일 3식 급식 학교 조리직렬 증치
- 전기용량 1,000kW이상 기관: 자격증 소지 공업 또는 전기직렬 증치
- 보일러 안전관리자 의무배치 기관: 자격증 소지 공업 또는 열관리직렬 증치

<부표5> 광주광역시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치기준

1. 단설유치원 <부표5-1>

직렬 학급	교육행정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시설관리	계	비 고
10학급 이하	7~8급 1	8급(또는 사무운영) 1		2	
11학급 이상	7급 1, 8급 1	8급(또는 사무운영) 1		3	

2. 초등학교 <부표5-2>

직렬 학급	교육행정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시설관리	계	비 고
분교장		8급(또는 사무운영) 1		1	·대규모학교(40학급 이상), 다중사업학교 등을 선별하여 5급 행정실장 배치 가능
10학급 이하	6~7급 1	8급(또는 사무운영) 1	1	3	
11 ~ 36학급	6급 1, 7~8급 1	8급(또는 사무운영) 1	1	4	
37학급 이상	6·7·8급 각1	8급(또는 사무운영) 1	1	5	

<정원배치 공통 사항>

- **기준 학급수** : 급별 학급수+특수 학급수+병설 유치원 학급수+방통중학교 학급수
- 기준 학급수가 경계에 있는 경우 ±2학급 범위 내에서 학생수·학교실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사무실무사(교육공무직원) 배치 기관(학교) 정수 반영 : 초등학교 39학급 이상에 배치된 사무실무사 정수를 지방공무원 정원에 반영하여 배치
- 시설관리직렬 정원 : BTL학교는 시설관리직렬 미 배치
- 급식학교 조리직렬은 자연감소 인력만큼 매년 감원 ⇒ 「교육공무직원」으로 단계적 전환

-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기준은 정원관리형편과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할 수 있음

※ 기준학급수는 특수학급·병설유치원 학급수가 포함된 기준 학급수임

<부표6> 대전광역시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

유치원·초등학교 정원책정기준(일반직 공무원)

학급수 직군	단 설 유치원	11학급 이하	12~24 학급	25~28 학급	29~35 학급	36학급 이상
행정 (행정·기술)	8급 1명	7급 1명	6~7급 1명*	6급 1명 8급 1명	6급 1명 7~8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소 계	1	1	1	2	3	3
학급수 직군	단 설 유치원	11학급 이하	12~28학급		37학급 이상	
관리운영 ·기술	사무운 영 1명	사무운영 또는 시설관리 1명 ~ 사무운영1 · 시설관리1	사무운영 1명 시설관리 1명		시설관리 1명	
소 계	1	1 ~ 2	2		1	
합 계	단설 유치원	11학급 이하	12~24 학급	25학급 이상		
	2	2 ~ 3	3	4		

① 학급수 기준

- 편성 학급수: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포함
- 신설학교: 완성학급 기준(단, 학급완성 시기를 고려하여 순차적
배정 가능)

② 분교에는 사무운영직 1인, 시설관리직 1인 배치

③ 지방위생직 공무원 배치: 급식학교는 정원 범위 내 1인 배치

<부표7> 울산광역시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치기준

일반직(학급 수는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포함)

학교급별	기준학급	구분	정원배정기준	비 고	
유치원 (단설)	유치원당	행정직군	7급 1명 8급 1명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1명		
초 등 학 교	병설 유치원 설치 학교	분 교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학교 : 조리 1인 (정원 범위내 배치) ※ 정원 범위 내에서 급식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배치 ○ BTL운영 학교는 기술직 (관리운영직) 배치 않음 ○ “교육행정8급” 과 “사무운영” 은 배치인원수 내에서 상호변경 하여 배치할 수 있음 ○ 기준 외 정원 증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학차량 운행 학교* 운전직 증치
		9학급이하	행정직군	7급 1명 8급 1명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1명	
		10-19학급	행정직군	6급 1명 8급 1명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1명	
		20-29학급	행정직군	6급 1명 8급 2명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1명	
	30학급이 상	행정직군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1명		
	병설 유치원 미설치 학교	분 교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1명	
		11학급이 하	행정직군	7급 1명 8급 1명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1명	
		12-25학급	행정직군	6급 1명 8급 1명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1명	
26-39학급	행정직군	6급 1명 8급 2명			

(부표7 계속)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1명
	40학급 이상	행정직군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	1명

- ※ 정원 산정 시 기준 학급수의 3학급 범위 내에서 학급의 증감이 있을시 정원 재조정시까지 현행 정원 유지
- ※ 통합학교는 전체학급수를 기준으로 상급학교 배치기준을 적용하되 추가 배치 인력은 별도로 정함
- ※ 기능감소직렬(시설관리, 운전, 조리)의 자연감소(퇴직) 등에 따라 정원 감축을 탄력적으로 운영

<부표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기준

구 분		정 원 배 정	계
단설 유치원	학생수 230명 이상	교행 6급 1, 교행 7급 1, 교행 8급·사무행정 실무원 1	3
	학생수 130명 이상 ~ 230명 미만	교행 6급 1, 교행 8급·사무행정실무원 1	2
	학생수 130명 미만	교행 7급 1, 교행 8급·사무행정실무원 1	2
초등 학교	학생수 1,500명 이상	교행 6급 1, 교행 7급 2 교행 8급·사무운영직렬·사무행정실무원 2	5
	학생수 850명 이상 ~ 1,500명 미만	교행 6급 1, 교행 7급 1 교행 8급·사무운영직렬·사무행정실무원 2	4
	학생수 250명 이상 ~ 850명 미만	교행 6급 1, 교행 7급 1, 교행 8급·사무운영직렬·사무행정실무원 1	3
	학생수 130명 이상 ~ 250명 미만	교행 6급 1, 교행 8급·사무운영직렬·사무행정실무원 1	2
	학생수 130명 미만	교행 7급 1, 교행 8급·사무운영직렬·사무행정실무원 1	2

※ 교육행정직렬은 보건, 식품위생, 시설, 공업, 행정 직렬로 일부 대체하여 배정할 수 있음

<정원배정 일반사항>

-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등 정원 배정기준」은 정원관리의 형편과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학생수는 당해연도 3. 1.자 및 9. 1.자 학급편성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함
 - 학생수 산정시 병설유치원 원아수 포함
- 조리, 운전, 화공운영, 기계운영, 시설관리, 공업 직렬 정원은 해당 인력수요의 변화와 학교 여건에 따라 배정함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상일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정원(공업직렬 1명)을 추가 배정

- BTL 및 학교시설관리용역 사업 대상 학교에는 시설관리직렬 정원 미배정(부분BTL 학교는 시설관리직렬 정원 배정)
- 사무행정실무원 자연 감소 시 해당 정원을 감축하고, 교육행정직렬,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 배정
-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 신설학교의 경우 원활한 개교업무를 위해 정원을 일정기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 영재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인문계·상업계혼합운영고등학교 등 학교별 특수성 및 여건에 따라 정원을 일정기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 향후 학생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정원배정을 유예할 수 있음
 - 읍·면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인력 상황에 따라 정원 배정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부표9> 경기도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

1. 단설유치원 <부표9-1>

규모 / 직렬		지방공무원 정원 산정 기준			
유치원 규모		① 대상 유치원의 학급수 및 학생수 (단위 : 학급, 명)			
		구 분	일반 학급	특수 학급	계
		학급수	3~17	1~3	5~20
		학생수	55~314	1~12	61~320
		학급당 학생수 평균	20	4	17
		* 근거 : 2017.3.5.자 학급편성결과(연도말 기준) ② 정원책정 기준 학급수 및 학생수			
		9학급【일반8(3/4/5/혼합반 각2학급)+ 특수1】			
		164명【8×20+1×4】			
		③ (지역교육지원청) 책정구간별 ±2학급 범위내 해당 학교 상호 간 결산액(최근 3년 평균액) 등 교육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정원 조정 가능			
교육행정	학급수	9학급 이하	10학급 이상		
	학생수 (비율)	전 체	147명 이하	148명 이상	
		-	(9학급 규모의 90% 이하)	(91%이상)	
	정 원	7급이하 1명 <1명>	7급이하 1명 <1명>	7급이하 2명 <2명>	
시설관리	학급수	전 체			
	정 원	“시설관리 7급이하 1명”(“교육행정 8급 1명”으로 대체 요청 가능)			
참고사항		☞ 해당 학교 운영상 시설관리직을 교육행정직으로(또는 교육행정직을 시설관리직으로) 정원 조정하는 경우 정기 인사(매년 1월, 7월) 현원 배치를 고려하여 최소 2개월 전(4월/10월말)까지 지역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도교육청으로 신청 바람			

☞ 상기 직렬 이외 직렬은 생략함(조리직, 운전직은 퇴직 시 정원 조정 협의 바람)

2. 초등학교 <부표9-2>

규모/직렬		지방공무원 정원 산정 기준																																								
초등학교 규모	<p>① 대상학교의 학급수 및 학생수 (단위 : 학급, 명)</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일반학급</th> <th rowspan="2">특별학급</th> <th rowspan="2">특수학급</th> <th rowspan="2">계</th> </tr> <tr> <th>초</th> <th>병설유</th> <th>분교장</th> </tr> </thead> <tbody> <tr> <td>학급수</td> <td>5~63</td> <td>1~6</td> <td>1~6</td> <td>1~3</td> <td>1~3</td> <td>6~68</td> </tr> <tr> <td>학생수</td> <td>19~2,247</td> <td>3~126</td> <td>2~115</td> <td>9~45</td> <td>1~23</td> <td>34~2,297</td> </tr> <tr> <td>학급당 학생수 평균</td> <td>26</td> <td>17</td> <td>7</td> <td>14</td> <td>4</td> <td>25</td> </tr> </tbody> </table> <p>* 근거 : 2017.3.5.자 학급편성결과(연도말 기준)</p>											구 분	일반학급			특별학급	특수학급	계	초	병설유	분교장	학급수	5~63	1~6	1~6	1~3	1~3	6~68	학생수	19~2,247	3~126	2~115	9~45	1~23	34~2,297	학급당 학생수 평균	26	17	7	14	4	25
	구 분	일반학급			특별학급	특수학급	계																																			
		초	병설유	분교장																																						
	학급수	5~63	1~6	1~6	1~3	1~3	6~68																																			
	학생수	19~2,247	3~126	2~115	9~45	1~23	34~2,297																																			
	학급당 학생수 평균	26	17	7	14	4	25																																			
	<p>② 정원책정 기준 학급수 및 학생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8학급</th> <th>26학급</th> <th>28학급</th> <th>59학급</th> </tr> </thead> <tbody> <tr> <td>[일반6+병설유1+특수1]</td> <td>[일반23+병설유2+특수1]</td> <td>[일반25+병설2+특수1]</td> <td>[일반56+병설유2+특수1]</td> </tr> <tr> <td>177명</td> <td>636명</td> <td>688명</td> <td>1,494명</td> </tr> <tr> <td>[6×26+1×17+1×4]</td> <td>[23×26+2×17+1×4]</td> <td>[25×26+2×17+1×4]</td> <td>[56×26+2×17+1×4]</td> </tr> </tbody> </table>											8학급	26학급	28학급	59학급	[일반6+병설유1+특수1]	[일반23+병설유2+특수1]	[일반25+병설2+특수1]	[일반56+병설유2+특수1]	177명	636명	688명	1,494명	[6×26+1×17+1×4]	[23×26+2×17+1×4]	[25×26+2×17+1×4]	[56×26+2×17+1×4]															
	8학급	26학급	28학급	59학급																																						
	[일반6+병설유1+특수1]	[일반23+병설유2+특수1]	[일반25+병설2+특수1]	[일반56+병설유2+특수1]																																						
	177명	636명	688명	1,494명																																						
[6×26+1×17+1×4]	[23×26+2×17+1×4]	[25×26+2×17+1×4]	[56×26+2×17+1×4]																																							
<p>③ (지역교육지원청) 책정구간별 ±2학급 범위내 해당 학교 상호간 결산액(최근 3년 평균액) 등 교육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정원 조정 가능</p>																																										
교육행정	학급수	8학급 이하	9학급 이상 ~ 26학급 이하		27학급 이상 ~ 28학급 이하		29학급 ~ 59학급 이하		60학급 이상 ~																																	
	학생수 (비율)	전체	159명 이하	160명 이상	572명 이하	573명 이상	619명 이하	620명 이상	1,499명 이하	1,500명 이상																																
		-	8학급 규모의 90% 이하	91% 이상	26학급 규모의 90% 이하	91% 이상	28학급 규모의 90% 이하	91% 이상	-	-																																

(부표9-2 계속)

		정원	7급 이하 1명	7급 이하 1명	7급 이하 2명	7급 이하 2명	6급 또는 7급 1명, 7급 이하 1명	6급 1명, 7급 이하 1명	6급 1명, 7급 이하 2명	6급 1명, 7급 이하 2명	5급 1명, 6급 1명, 7급 이하 2명
			1명	1명	2명	2명	2명	2명	3명	3명	4명
시설관리	재정사업	학급수	47학급 이하			48학급 이상 ~ 50학급 이하			51학급 이상		
		정원	7급이하 1명			6급 또는 7급이하 1명			6급 1명, 7급이하 1명		
		1명			1명			2명			
	BTL	학급수	전 체								
정원		미배치									

☞ 상기 직렬 이외 직렬은 생략함(조리직, 운전직은 퇴직 시 정원 조정 협의 바람)

< 각급학교 정원책정 기본사항 >

◇ 공통사항

- ▶ 학급수* 및 학생수** 산정 구간에 따른 정원책정
 - * 학급수 : 일반학급수+특별학급수+병설유치원학급수+분교장학급수+특수학급수
 - ** 학생수 : 학급수 구간에서 학급당 학생수 평균의 90%이하시 전(前) 구간 정원책정
- ▶ 사무운영직렬은 교육행정(7급이하)직렬 학급수 구간별 총정원 내에서 통합 운용 (단, 교육행정실장 제외)
- ▶ 2013년 개교학교부터 학급수에 상관없이 학교당 시설관리직렬 정원 1인 책정

◇ 지역교육지원청 관할 유·초·중학교 정원 운용의 안정성 및 정원책정의 자율권 및 책무 부여

- ▶ **(사유)** 학급수 및 학생수 산정 구간에 따른 정원 책정 보완
 - 학급수 산정 구간 경계에서 매년 본편성 학급수의 증가 및 감소로 해당 학교의 직렬별/직급별 정원 증원 및 감원이 수시 발생하므로 지역교육지원청 정원 운용의 안정성 저해
 - ▶ **(지역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정원책정)**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서 학급수 및 학생수 산정 구간에 따라 책정하여 배정한 직급별 정원 총수 범위 내에서 전년 대비 ± 2 학급 해당 학교 상호 간 교육행정여건*을 비교하여 정원 조정 가능
 - * 교육행정여건 : 결산액(최근 3년 평균액), 시책사업, 재산관리, 지자체 보조금, 시설개방, 건물노후도 등
 - ▶ **(패널티)** 상기 정원책정 범위 이외의 부적정 인력운용 적발 시 사유서 제출 등 행정조치
- ◇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4학급 이상(특수학급 제외) 해당 학교는 정원 1명(교육행정7급) 추가 책정(2014년 국가정책수요 반영)
 → 이 경우 병설유치원 일반학급수는 초등학교 학급수에서 제외하여 정원 책정(중복 방지)
- ◇ **(고등학교)** 특성화고, 특목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평준화 입학추첨 관리교는 학급수 구간 이외의 학교여건(규모)를 고려하여 정원 추가 책정 검토
- ▶ 체육고 8학급 이상 5급 배정(舊.교육인적자원부 지침, 2006.6.29.) 등
- ◇ **(운전직, 조리직)** 자연감소(퇴직 등) 결원 발생 시는 반드시 교육공무직원 대체(조리직) 및 임차용역(운전직)으로 신속하게 전환 및 정원 감원 조치(대체직의 무기계약 전환 대처)
- ◇ **(전기직)** 전기 계약용량 1,000kw이상 학교는 공업(전기) 정원 1명 책정
- ◇ **(지역 특수성)** 행정 5-6급 비율이 낮은 지역(농어촌 및 중·소규모 도시)의 경우 시·군 평균 범위 내에서 증원 가능

- ◇ (학교별 가중치 사업에 정원 운용 적정성 검토) 지역교육청 관할 학교의 가중치 사업(별첨)으로 업무가중 및 정원 추가 소요 발생시는 도교육청 정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검토

- ◇ 신설학교 정원책정은 별도 산정(별첨 참조)
 - ▶ 교육행정실 교육공무직원 미배치에 따른 교육행정직 1명 추가 배치

<부표10> 강원도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정원배치기준

1. 배치기준표

구 분	행정직원 배치 기준(단위: 명)					
단설유	기준값	600 미만	1,200 미만			
	정원	1	2			
단설 초·중	기준값	750 미만	1,030 미만	1,950 미만	2,900 미만	2,900 이상
	정원	1	2	3	4	5
초등 (분교)	기준값	1,010 미만	1,930 미만	2,900 미만	2,900 이상	
	정원	2	3	4	5	
초등 (병설유)	기준값	750 미만	1,010 미만	1,950 미만	2,900 미만	2,900 이상
	정원	1	2	3	4	5

2. 학교 행정직원

$$\begin{aligned} \text{○ 배치기준값} &= (\text{학교급} \times 887.47)40\% + (\text{학급수} \times 83.46)38\% + (\text{학생수} \times 4.063)7\% \\ &\quad + (\text{교직원수} \times 26.384)3\% + (\text{최근3년간 세출결산 평균} \\ &\quad \times 0.000001)12\% \end{aligned}$$

* 학교급 가중치 : 단설중 1.0, 단설유·초 1.1, 초등(분교) 1.2,
단설일반고 1.3, 초등(병설유)·특목고 1.4, 특성화고
1.5, 초등(분교+병설유)·병설중고(일반) 1.6,
병설중고(특성화)·초중통합 1.7, 특수학교 1.8

* 추가가점 부여

- 병설유치원 2원이상 보유교 : 추가 1원당 0.1
- 분교 2교이상 보유교 : 추가 1교당 0.05
- 기숙사 보유교 : 교당 0.05

<부표11> 충청북도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기준

유치원·초등학교

직렬 \ 학급수	8학급 이하	9~20학급 (단설유 일부)	21~48학급	49학급 이상	초·중 통합교*
교행·사무	7급1 8급 0~1	6급1 8급1	6,7,8급 각1	6,7급 각1, 8급2	6,급1, 8급2
시설관리	1	1	1	1	1
계	2~3	3	4	5	4

* 초·중통합교(한송·수산·덕산·청풍): 교행6·8급 각1은 중학교 배정(교육지원청은 반드시 분리 배정)

- 기준 학급수 = 본교·분교장·병설유치원·부설학교(방송통신고) 학급수+특수 학급(시설관리는 분교학급수 제외)
- 기준 학급수가 경계에 있는 경우 3학급 범위 내에서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적용할 수 있음
- 병설유 보유학교 중 병설유학급수 및 본교 학급수의 규모 고려하여 일부 학교에 한해 교행 1명 추가 증원
- 행정실무사 과원 학교 중 학교 규모 및 행정실 근무인력 고려하여 지방 공무원 정원에 반영

<부표12> 충청남도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치기준

1. 단설유치원 <부표12-1>

학급수	학교수	일반직	행정8급 (사무)	시설관리	비고
5학급 이상	18	7급 1, 8급 1		1	
10학급 이상	3	6급 1, 8급 1		1	

※ 단서조항: 학교신설 및 이전

- 교육행정 7급이 없는 경우 행정 8급을 교육행정 7급 1명으로 조정 가능(단 1년 간)

2. 초등학교 <부표12-2>

학급수	학교수	일반직	행정8급 (사무)	시설관리	비고
분교장 3학급 이상	13			1	
7학급 이하	128	7급 1		1	
8학급	96	7급 1	1	1	
9 ~ 15학급	56	6급 1, 8급 1		1	
16 ~ 17학급	13	6급 1, 7급 1		1	
18 ~ 35학급	75	6급 1, 8급 2		1	
36 ~ 46학급	28	6급 1, 7급 1, 8급 1		1	
47학급 이상	10	6급 1, 7급 1, 8급 2		1	

※ 단서조항

1. (중학교 통합학교) 행정 7급 1명, 시설관리직 1명 책정
2. (분교장) 학생수 10명 이하 시설관리직 1명 감 책정
3. (8학급) 학생수 40명 이하 학교 사무 1명 감 책정 → “삭제 “
4. (8학급) 학생수 100명 이상교 행정 7급을 행정 6급으로 점진적 책정
5. (7학급 이하) 지역별 여건 및 학교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행정8급 (사무) 정원 점진적으로 증원,

6. 병설유치원 3학급 이상

- (22~35학급) 행정 8급 1명을 행정 7급으로 조정, (16~17학급) 행정8급 (사무) 1명 증하고 행정7급은 8급 조정, (15학급) 행정8급(사무) 1명 증

7. (47학급 이상) BTL교 행정 8급 1명 감 책정

8. (48학급 이상) 대규모학교 중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행정 6급을 행정 5급으로, 행정 8급 1명을 행정 7급 1명으로 책정

9. (정원배정 이외 학교자체 채용한 행정실무원 배치교)

- 행정 8급(사무) 1명 감 가능

10. 학교신설 및 이전

- 교육행정 7급이 없는 경우 행정 8급(사무)을 교육행정 7급 1명으로 조정 가능(단 1년 간)

○ 학급수 : 본교 학급수 + 분교학급수(초등) + 병설유치원 학급수 + 특수 학급수를 포함하여 산정

○ 행정8급(사무)은 행정 8급 또는 사무 중 1명 책정가능

○ 사무운영직은 학교급별 배치기준과 다르게 지역여건에 따라 정원 조정 가능(전직시험 또는 사무운영직 퇴직 완료시 까지)

<부표13> 전라북도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기준

1. 단설유치원 <부표13-1>

학 급 수		6학급 미만	6~10 학급	11학급 이상	계
유치원 수		1	18	1	20
정원		3	3	4	
행정 인력	소 계	2	2	3	
	교육 행정	6급	-	1	1
		7급	1	-	1
		8급	0~1	0~1	0~1
	사무운영	0~1	0~1	0~1	
시설관리		1	1	1	

※ 11학급 이상 초등학교 배정기준 준용

2. 초등학교 <부표13-2>

학 급 수		분교 장	5 학급 이하	6~8	9~ 17	18~ 25	26~ 37	38~ 42	43 이상	계
학교 수		5	31	217	65	41	40	8	8	415
정원		1	2	3	4	4	5	6	7	
행정 인력	소 계	0~1	2	2	3	3	4	5	6	
교육 행정	5급						0~1	1		
6급			0~1	1	1	1	0~1	1		
7급		1	0~1	0~1	1~2	1~2	1~2	1		
8급		0~1	0~1	0~1	0~1	0~1	1~2	1~2		
사무 운영	0~1	0~1	0~1	0~1	0~1	1~2	1~2	1~2		
시설관리		0~1	0~1	1	1	1	1	1	1	

※초등학교 정원배정 내부기준

- (6급) 7학급 70명 이상 1명 배치
- (7급) 18학급이상 7급2명 배치, 13~17학급 7급 1명
- (사무운영) 병설유치원 3학급 이상 1명 추가 배치
- (병설유치원 3학급이상 학교)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학급수 정원 + 사무 1명. 다만, 병설유치원 3학급 이상 학교 중 교육행정 7급 미 배치는 7급 우선 배정

<공통사항>

- (기준 학급수) 일반 학급수 + 병설유치원 학급수 + 특수학급 학급수
- (BTL 학교) 기준 학급수에 맞게 배치하되 시설관리 직렬 해당없음
- (군단위 교육지원청)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각에 정원 배정기준으로 배치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초·중학교간 인력을 먼저 기준에 맞게 조정 배치하고 정원 변경 요청
-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예산지원) 시설관리원 : 행정과, 시설관리용역 : 시설과

<부표14> 전라남도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기준

1. 단설유치원 <부표14-1>

구분		학급수	9학급 이하	10학급 이상	비고
교육행정	6급			1	
	7급		1		
	8급				
사무운영(또는 행정8급)			1	1	
시설관리			1	1	
계			3	3	

2. 병설유치원

- 초등학교 및 분교 병설유치원 학급 및 학생 수 : 초등학교에 포함
- 초등학교 및 분교 병설유치원 3학급 이상 : 사무운영(또는 행정8급) 1명
 - 1순위 : 병설유치원 4학급 이상
 - 2순위 : 병설유치원 3학급 중 총학급수(초등+유치원)가 많은 학교 순
(단 총학급수가 같은 경우 총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순)

3. 초등학교 <부표14-2>

구분		학급수	분교	11학급 이하			12학급 이상		비고
			학생수 25명 이상	학생수 40명 미만	학생수 40명 이상	학생수 1000명 미만	학생수 1000명 이상		
교육행정	6급				1	1	1		
	7급			1		1	1		
	8급				1	1	1		
사무운영(또는 행정8급)			1	1			1		
시설관리			1	1	1	1	1		
계			2	3	3	4	5		

※ 1. 학급·학생 수 : 분교 및 분교 학급·학생수 (병설유치원 포함)
 2. 분교 4개 이상 관리학교 : 시설관리 2인 배치
 3. 11학급 이하(학생수 40명 이상) 구간의 6급 배치 : 총액인건비 고려 연차적 배치
 4. 학생수 1,000명 이상(12학급 이상)과 병설유치원의 행정인력 배치기준이

(부표14-2 계속)

중복될 경우

> 병설유치원 행정인력 배치기준만 적용

<공통사항>

1. 시설관리 인력운영 효율화 학교

가. 시설관리직 정원 미 배정 (단, 사업 종료 시 정원 재 배정)

나. 소규모 학교 실무자 직급 상향

(사무운영직의 교육행정직 전직 수와 연계 연차적 추진)

☞ 대상 : 교육행정 2명 배치교(6급1, 8급1) 중 시설관리 효율화 학교
(8급⇒7급)

2. 신설학교 : 개교년도에 완성학급 기준 인력 배치 (추후 인력 조정)

<부표15> 경상북도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치기준

구분	2017. 7. 1.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 기준							
	배치기준(안)	일반직					시설 관리 (b)	합계 (a+b)
		5급	6급	7급	8급	소계 (a)		
단설 유치원	모든 유치원			1	1	2	1	3
	[감원]운전원 배치 유치원(감꽃,경산)						1	1
초등 학교	4학급 이하				1	1		1
	5~6학급(40명 미만)			1		1		1
	6학급(40명이상 or 분교보유) ~7학급 (50명 미만)			1		1	1	2
	7학급(50명이상 or 분교보유) ~8학급 (90명 미만)			1	1	2	1	3
	8학급(90명이상) ~14학급		1		1	2	1	3
	15~17학급		1	1		2	1	3
	18~26학급		1			2	3	4
	27~36학급		1	1	1	3	1	4
	37~43학급		1	1	2	4	1	5
	44학급 이상	1	1	1	1	4	1	5
	[증치]분교장 2교 이상 보유						1	1
	[증치]병설유치원 4학급(85명) 이상				1	1		1
※ 6학급(40명 미만)시설관리 미배치교 인건비 지원								

<부표16> 경상남도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기준

1. 단설유치원 <부표16-1>

변경전(2017.1.1.)		변경후(2017.7.1.)	
학급규모	배정기준	학급규모	배정기준
전체	▶ 교육행정7급1, 교육행정8급1, 시설관리1	전체	▶ 교육행정7급1, 교육행정8급1, 시설관리1

※ 운전직 배정 유치원 : 시설관리1명 감

2. 초등학교 <부표16-2>

변경전(2017.1.1.)		변경후(2017.7.1.)	
학급규모	배정기준	학급규모	배정기준
▶ 분교장	▶ 시설관리1	▶ 분교장	▶ 시설관리1
▶ 5학급 이하	▶ 교육행정7급1, 시설관리1	▶ 5학급 이하	▶ 교육행정7급1, 시설관리1
▶ 6 ~ 12학급	▶ 교육행정7급1, 교육행정8급1, 시설관리1	▶ 6 ~ 12학급	▶ 교육행정7급1, 교육행정8급1, 시설관리1
▶ 13 ~ 17학급	▶ 교육행정6급1, 교육행정8급1, 시설관리1	▶ 13 ~ 17학급	▶ 교육행정6급1, 교육행정8급1, 시설관리1
▶ 18 ~ 35학급	▶ 교육행정6급1, 교육행정8급2, 시설관리1	▶ 18 ~ 35학급	▶ 교육행정6급1, 교육행정8급2, 시설관리1
▶ 36 ~ 51학급	▶ 교육행정6급1, 교육행정7급1, 교육행정8급1, 시설관리1	▶ 36 ~ 51학급	▶ 교육행정6급1, 교육행정7급1, 교육행정8급1, 시설관리1
▶ 52학급 이상	▶ 교육행정6급1, 교육행정7급1, 교육행정8급2, 시설관리1	▶ 52학급 이상	▶ 교육행정6급1, 교육행정7급1, 교육행정8급2, 시설관리1
▶▶ 분교장 2교 이상인 본교: 교육행정8급1명 증치 ▶▶ 병설유치원 4학급 이상 학교:		▶▶ 분교장 2교 이상인 본교: 교육행정8급1명 증치 ▶▶ 병설유치원 4학급 이상 학교:	

(부표 16-2 계속)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행정8급1명 증치 (단, 20학급이하 학교는 제외)</p>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행정8급1명 증치 (단, 25학급이하 학교 제외)</p>
---	--

학급수

- 본교 학급수 + 병설유치원 학급수 + 특수 학급수 + 분교
학급수(분교 2교 이상 학교 제외)
- 사무운영직은 교육행정8급과 통합운영

<부표1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기준

초등학교

구분	분교장	5 학급 이하	6-16 학급	17- 20 학급	21- 27 학급	28- 49 학급	50- 65 학급	66 학급 이상	비 고
교육 행정 직렬 (사무 운영 직렬 포함)		7급 이하 1	7급 이하 2	6급 1, 7급 이하 1	6급 1, 7급 이하 2	6급 1, 7급 이하 2	5급 또는 6급 1, 7급 이하 3	5급 또는 6급 1, 7급 이하 4	▶ 병설유 치원 5 학급 이상 +1 (단, 유치원 학급수 포함하 여 정원이 증가한 경우는 제외)
시설 관리	1	1	1	1	1	2	2	2	▶교지 면적 50,000 ㎡이상 +1
계	1	2	3	3	4	5	6	7	

- ※ 사무운영직렬이 교육행정직렬로 전환이 완료될 때 까지는 배치 기준에 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 ※ 정원의 범위 안에서 배치하며, 정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동일한 배치기준에서는 학급수 및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지역별·학교별 실정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 정원의 범위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배치할 수 있다.
- ※ 학급수 : 본교 학급수에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특수학급은 제외(단, 분교장이 있는 학교인 경우 아래 기준 적용)

- ☞ **교육행정직(사무운영직렬 포함) : 본교+병설유치원+분교장**(분교장 행정업무 비중을 감안하여 **분교장을 학급수에 포함하여** 배치기준 적용)
 - ☞ **시설관리 : 본교+병설유치원**(분교장에 별도 시설관리인력이 배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교 배치인원 산정시 **분교장을 학급수에 미포함**)
 - ☞ **분교장 학생수가 60명 이상이면 교육행정직렬 7급이하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 ※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운영학교에 **교육행정직렬 7급이하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연구보고 2017-06

국공립 유치원 행정 지원체계 연구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인 소장직무대행 이미화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승림디앤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19-0 93370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ChildCare and Institute of Education

